

표준약관의 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A Study on Purification of the Terminology
and Sentences for Standard Stipulations

研究者 :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Kim, Sung-Cheon

2004. 8. 31

국 문 요 약

이 보고서는 표준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한다. 표준약관은 주로 사업자단체와 같은 공동의 주체가 일정한 범위의 거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약관이라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표준약관제도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해소하는 공정성 차원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표준약관의 투명성차원에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표준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민사법령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민사법령용어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는 물론 난해하고 권위적인 용어의 사용이 많다. 소비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용어는 소비자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관의 규범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표준약관의 문장도 민사법령의 문장구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문투의 문어체, 일본어의 번역식 표현 등이 다수 있고, 비문법적인 문장, 명사구를 빈번히 사용하는 경우 길고 복잡한 문장 구조로 인해 의미상의 혼란을 초래한다.

이 보고서는 표준약관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실거래에서 신뢰성과 규범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승인되어 통용되고 있는 표준약관의 용어와 문장에 대한 순화기준을 정립하고, 구체적으로 일부 표준약관을 대상으로 순화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표준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용어 순화, 문장순화

Abstract

This report purposes the purification of the terminology and sentences for Standard Stipulations. By Adhension Contracts Act, Standard Stipulations which Enterprises, or Trade Associations etc. may adopt may be used as a standard in a certain field of trade. And Any Enterprise or Trade Association etc. may file a petition wit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o request tha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termine whether or not an adhesion contract as provided is in violation of this Act.

But Standard Stipulation includes problems about terminology and sentences. Standard Stipulation should be written easily and correctly for the public's understanding. But the real is far from the ideal in Korea. Standard Stipulation use Korean terminology and sentences incorrectly and inappropriately. The terminology of Standard Stipulation is being invaded by so many foreign words. In particular, Standard Stipulation need for semantic transparency.

Therefore, this report will suggest solutions for those parts to be purified in Standard Stipulations: inappropriate use of terms, ungrammatical sentences, and mistakes in word spacing.

This report will serve as a useful guide for purification of the terminology and sentences in Standard Stipulations field.

※**Keywords** : **Standard Stipulations, Adhension Contracts Act, Korea Fair Trade Association, Terminology Purification, Sentences Purification**

목 차

국 문 요 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제 2 장 표준약관의 순화기준	17
제 1 절 표준약관 용어의 순화기준	17
1. 한자어의 순화	17
2. 일본식 용어의 순화	19
3. 권위적인 용어의 순화	20
제 2 절 표준약관 문장의 순화기준	25
1. 비문법적인 문장의 순화	25
2. 일본어체 문장의 순화	27
3. 명사구 문장의 순화	27
4. 문어체 문장의 순화	28
5. 명사 위주 압축적 표현의 순화	28
6. 그 밖의 의미적 오류의 순화	28
7. 법률명칭 등 붙여쓰기의 순화	29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31
제 1 절 학원표준약관	31
1. 의 의	31
2. 순화안	31

제 2 절 체력단련장(헬스장)이용 표준약관	43
1. 의 의	43
2. 순화안	43
제 3 절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51
1. 의 의	51
2. 순화안	51
제 4 절 상품권 표준약관	64
1. 의 의	64
2. 순화안	64
제 5 절 학습지 표준약관	69
1. 의 의	69
2. 순화안	70
제 6 절 세탁업 표준약관	77
1. 의 의	77
2. 순화안	77
제 7 절 영화관람 표준약관	87
1. 의 의	87
2. 순화안	87
제 8 절 음식점이용 표준약관	90
1. 의 의	90
2. 순화안	91
제 9 절 이사회물 표준약관	99
1. 의 의	99
2. 순화안	100

제10절 택배 표준약관	117
1. 의 의	117
2. 순화안	118
제 4 장 결 론	139
참 고 문 헌	14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표준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한다. 표준약관은 주로 사업자단체와 같은 공동의 주체가 일정한 범위의 거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약관이라는 점에서 한 사업자가 자신만의 거래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만든 약관과 다르다.¹⁾

표준약관은 실거래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²⁾ 표준약관은 개별 약관이 갖는 특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단순히 한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한 개별약관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표준약관은 어떠한 개별 사업자의 영업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주체가 사업자단체이리 경우 개별 사업자의 이해관계보다는 전체 사업자의 공통된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약관의 내용이 훨씬 더 중립화·객관화될 수 있다.

둘째,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므로,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부당한 내용의 약관이 배제될 수 있다.

셋째, 사업자단체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함으로써 사후에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고, 사업자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약관제정의 주체로 사업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 개인이 표준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자가 자신만의 영업상 거래를 위해서 개별적인 의미의 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그 영업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주도하여 표준약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요거래분야 약관이용 실태 분석 및 표준약관(안)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용역과제, 2000.11. 참고

게는 자신이 사용하는 약관이 적법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내용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넷째, 개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자단체에서 마련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스스로 자신만의 약관을 만들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는 시간적 손실까지 막을 수 있어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섯째, 동종의 거래에서 동일한 계약조건을 사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여섯째,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개별적으로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어려움을 감수할 필요가 없고, 약관이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의 거래관계에서 통용되기 이전에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심사의 장점도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을 운용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표준약관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이 적용되기 위한 공통의 사업영역이 확정되어야 한다. 즉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는 다수의 일정한 사업들을 단일한 사업영역으로 규정한 후, 이렇게 확정된 단일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의 형태가 단순하고 획일화되어 있는 전통적인 사업영역에서는 이러한 선행작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개별 사업마다 거래형태가 상이하고 다양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그룹화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둘째, 여러 개별사업들을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규정한 뒤에 이에 부합하는 표준약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개별 사업자들의 거래 특징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거래유형이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경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거래형태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현재 표준약관제도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해소하는 약관의 불공정성 차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표준약관의 투명성차원

이다. 즉 표준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이다. 특히 표준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민사법령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민사법령에 내재한 법령용어의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는 물론 난해하고 권위적인 용어의 사용이 많다. 소비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용어는 소비자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약관의 규범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표준약관의 문장도 민사법령의 문장구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문투의 문어체, 일본어의 번역식 표현 등이 다수 있고, 비문법적인 문장, 명사구를 빈번히 사용하는 경우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로 인해 의미상의 혼란을 초래한다.

이에 표준약관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의 용어와 문장의 순화가 시급하다.

첫째, 표준약관이 실거래의 실천규범이 되게 하기 위해 순화가 필요하다. 표준약관의 용어와 문장은 알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쉬워야 한다. 용어가 쉬어야 하고 문장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일반 국민이 계약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둘째, 표준약관이 바르고 정확한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 순화가 필요하다. 표준약관의 문장은 다른 문장에 비해 바르고 분명하고 조리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표준약관은 민사법령의 경우와 유사하게 문법에 맞지 않고, 잘못된 표현이 많고, 모호하고 비논리적인 표현이 많다. 이런 것들은 분명하고 조리에 맞게 순화해야 한다.

셋째, 표준약관이 친숙한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 순화가 필요하다. 표준약관은 규제하는 약관, 군림하는 약관이어서는 아니된다. 친근한 약관, 자상한 약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표현, 위압적인 표현, 명령적인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표준약관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실거래에서 신뢰성과 규범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승인되어 통용되고 있는 표준약관의 용어와 문장에 대한 순화기준을 정립하고, 구체적으로 일부 표준약관을 대상으로 순화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여 통용되고 있는 표준약관은 22거래분야 54개이다<표1 참조>. 이 보고서에서는 학원표준약관, 체력단련장(헬스장)이용 표준약관,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상품권 표준약관, 학습지 표준약관, 세탁업 표준약관, 영화관람 표준약관, 음식점이용 표준약관, 이사화물 표준약관, 택배 표준약관 등 소비자에게 밀접한 거래분야의 10개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용어와 문장의 순화기준을 정립하고 순화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1> 표준약관 보급현황

거 래 분 야	표 준 약 관 명
1. 아파트분양 및 주택임대차	○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 임대주택 표준임대차 계약서
2. 병원이용	○ 수술(검사·마취) 동의서, ○ 입원약정서
3. 은행여신거래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 여신거래약정서 I (기업용) ○ 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 ○ 추가약정서(한도증액용), ○ 여신거래약정서 II(기업용) ○ 대출거래약정서 II(가계용), ○ 지급보증거래약정서(기업용), ○ 지급보증거래약정서(가계용) ○ 저당권 설정계약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보증서, ○ 근보증서
4. 상가분양	○ 상가 분양계약서
5. 백화점임대차	○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6. 은행예금거래	○ 예금거래기본약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 적립식 예금약관, ○ 거치식 예금약관

7. 주차장이용	○ 주차장 관리규정
8. 휴양콘도미니엄	○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 휴양콘도미니엄 입회계약서, ○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이용약관
9. 여행업	○ 국내여행 표준약관 ○ 해외여행 표준약관
10. 상품권이용	○ 상품권 표준약관
11. 전자거래	○ 인터넷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
12. 공연업	○ 영화관람 표준약관
13.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14. 운수업	○ 택배 표준약관
15. 관혼상제	○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 장례식장 표준약관 ○ 예식장 표준약관
16. 교육서비스	○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 학원표준약관 ○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 ○ 학습지 표준약관
17. 문화, 체육, 오락	○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 체력단련장 표준약관 ○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18. 이사서비스	○ 이사화물 표준약관
19. 사금융	○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
20. 가전제품 및 영업용 제품 거래	○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 ○ 무인경비 표준약관
21. 세탁서비스	○ 세탁업 표준약관
22. 자동차 분야	○ 자동차(신차) 매매 표준약관
22개 거래분야	54개 표준약관

표준약관의 순화기준은 법제처의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 2000년 민사소송법 개정, 민법 등 민사법령을 중심으로 한 한국법제연구원과 국어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김문오,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2001.
- 김문오,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법무부 검토 의뢰 법령을 중심으로』, 국립국어연구원, 2002.
- 김문오,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 국립국어연구원, 2002.
- 김문오·홍사만,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2003.
- 류창호, 『민법 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 박영도, 『법률용어사례집-유사법령용어』, 한국법제연구원, 2001.
-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 한국법제연구원, 『개정민사소송법의 법령용어 및 법률문장의 순화와향후과제』, 2003.

제 2 장 표준약관의 순화기준

제 1 절 표준약관 용어의 순화기준

1. 한자어의 순화

한자어는 한국어 속에 쓰이는 한자어휘로서, 한자에 비롯된 말을 고유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용어이다.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에도 순수리말이라 할 수 없고 여전히 한자어에 불과하다.

표준약관용어는 대부분 한자어이다. 한자어를 한글로만 표기한 경우에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곤란할 때가 있다. 한자어는 가급적 고유어로 순화할 필요성이 크다.

첫째, 소비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는 쉽고 평이한 말로 순화한다.

소비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로는 가액, 해태, 산정, 재산정, 멸실, 훼손, 준수, 산입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난해한 한자어는 계약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한자 용어는 순화해야 한다. 순화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액(價額) → 값

해태(懈怠)/하다 → 게으름, 나태/게을리 하다, 제때에 하지 않다

산정(算定) → 셈

재산정(再算定) → 다시 계산

산입(算入)하다 → 넣다

멸실(滅失)하다 → 없어지다

준수(遵守)하다 → 지키다

둘째, 한문투의 용어를 순화한다. 표준약관문장에서는 구시대적 용어가 적잖이 쓰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당해, 반하다, 위반, 위배 등의 한문투의 표현이 많다. 순화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제 2 장 표준약관의 순화기준

- 당해(當該) → 그, 해당
- 반(反)하다 → 어긋나다
- 위반(違反)하다 → 어긋나다
- 위배(違背)하다 → 어긋나다

셋째, 어려운 준말을 순화한다. 한자어의 약어가 약관문장에 사용되어 그 뜻을 알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불능, 요하다 등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줄기 이전의 원문을 쓰거나 쉬운 말로 바꾼다.

- 불능(不能) → 불가능
- 요(要)하다 → 필요로 하다

넷째, 복합어를 분할하고 순화한다. 표준약관의 용어에는 단일어로 띄어써야 할 용어가 붙여 쓰여져서 복합어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복합어는 법률용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복합어는 두 말 사이에 조사나 어미를 끼워 넣거나 풀어써 합성어를 분할할 수 있다. 이로써 합성어의 분할은 해당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 수령불능 → 받을 수 없음

다섯째, 일상생활 용어 중 쉽고 명확하게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순화한다. 대표적으로 개시, 재개시, 기재, 명시, 내에, 동일, 변경, 부당, 사망, 상실, 소재지, 소지, 연월일, 선납, 의한, 의하여, 인해, 인한, 일체, 종료, 주장, 중, 지체없이, 타, 타인, 허위, 첨부, 체결, 초과 등이다.

계약규범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 용어가 쉬운 것이 좋다. 따라서 일상용어라 할지라도 좀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어야 한다. 이에 일상생활 용어의 순화는 다음과 같이 매우 알기 쉬운 용어나 문장으로 순화한다. 순화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개시(開始) → 시작
- 재개시(再開始) → 다시 시작

기재(記載)하다 → 써넣다, 적다
내(內)에 → 안에
동일(同一) → 같은
명시(明示)하다 → 밝히다
연월일(年月日) → 날짜
지체(遲滯)없이 → 바로

2. 일본식 용어의 순화

표준약관에 들어온 일본식 용어 중 일본에서도 음독하고 있는 한자어는 일단 귀화한 말로 처리하고, 훈독하는 한자어는 한자로 쓰이기는 했지만 일본 고유어로 취급하여 순화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한자로 표기되어 훈독하는 용어들은 일본어에서도 일상생활에 쓰는 비공식적인 용어로서, 공식적인 음독 한자어와 구별된다. 일본식 용어중 훈독어(訓讀語)는 우리말과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마치 우리말처럼 사용되고 있어 언어사용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대표적으로 환불, 기산, 내지, 기타, 반환 등이 있다. 순화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환불(還拂) → 되돌려줌
내지(乃至) → ...부터 ...까지
기타(其他) → 그 밖의(에)
인도(引渡) → 건네줌
인수(引受) → 건네받음
최고(催告)하다 → 재촉하다, 독촉하다
반환(返還)하다 → 되돌려 주다
기산(起算)하다 → 셈을 시작하다
종료(終了) → 끝남
공제(控除)하다 → 빼다
고지(告知)하다 → 알리다
본(本) 약관 → 이 약관
송부(送付)하다 → 보내다

3. 권위적인 용어의 순화

각종 표준약관에는 권위적인 용어와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권위적 용어와 표현은 약관의 권위를 높이지만, 약관을 소비자로부터 유리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권위적인 용어와 표현은 일상적이고 친숙한 표현으로 순화한다.

표준약관에서 사람을 지칭하는데 단독으로 ‘자(者)’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일본어에서 ‘者’는 ‘もの’라고 혼동되는 고유어로, 한자로 표기되었을 뿐 한자어가 아니다. 우리말에서 ‘자(者)’는 자립적인 명사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의존명사로 쓰이거나, 때로는 접미사로 쓰이므로 일본어의 경우와는 다른 어휘적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도 일부 표준약관 조항에서는 ‘자(者)’를 자립 명사처럼 사용하여 매우 부자연스러운 예가 발견된다. 이처럼 ‘자(者)’는 우리말에 단독 명사로 정착된 정도가 낮으며, 그것이 표준약관에 쓰일 때에는 권위주의적이고 비하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어감을 없애고, 한자어가 주는 권위주의적 문어체 틀을 벗으려면 ‘자(者)’는 고유어인 ‘사람’으로 자연스럽다.

이외에도 처(處)한다, 과(科)한다, 명(命)한다 등이 있다.

<표2> 용어순화표

가액(價額) ⇒ 값	견적(見積)하다 ⇒ 어림(셈)하다
각종(各種) ⇒ 여러 가지	경미(輕微)한 ⇒ 가벼운, 대수롭지 아니한
개설(開設) ⇒ 냄/오픈	경합(競合) ⇒ 겹침, 다툼, 겨룸
개시(開始) ⇒ 시작	계산(計算)하다 ⇒ 셈하다
개요(概要) ⇒ 대강, 줄거리	고려(考慮)/하다 ⇒ 헤아림, 생각함/ 생각해보다
개정(改正) ⇒ 고침	과다(過多) ⇒ 너무 많음
거절(拒絶)하다 ⇒ 물리치다	과장(誇張)하다 ⇒ 부풀리다, 너무 자랑하다
거주(居住)하는 ⇒ 사는	
게시(揭示)/하다 ⇒ 내붙임, 써붙임/내붙이다, 써붙이다	

<p>교부(交付)하다 ⇒ 내(어)주다 교체(交替)/하다 ⇒ 바꿈/바꾸다 교환(交換) ⇒ 바꿈 구두(口頭)로 ⇒ 말로 구입(購入)하다 ⇒ 사들이다 권면(券面) ⇒ 앞쪽, 앞면 귀책사유(歸責事由) ⇒ 책임있는/ 지을 까닭, 책임져야 할 까닭 기명(記名) ⇒ 이름쓰 기명날인(記名捺印) ⇒ 이름쓰고 도장찍음 기산(起算)하다 ⇒ 셈을 시작하다 기재(記載)하다 ⇒ 쓰다, 써넣다, 적어넣다 날인(捺印)/하다 ⇒ 도장을 찍음/ 찍다 납부(納付)하다 ⇒ 내다 내부(內部) ⇒ 속, 안 내역(內譯) ⇒ 명세, 내용 내지(乃至) ⇒ ~부터 ~ 까지 누락(漏落) ⇒ 빠짐, 빠뜨림 다소(多少) ⇒ 조금 달성(達成)하다 ⇒ 이루다, 이룩하다 답변(答辯) ⇒ 대답 당시(當時)(에) ⇒ 그때(에) 대신(代身)하다 ⇒ 갈음하다 도달(到達) ⇒ 이름 도서(島嶼) ⇒ 섬 독자적(獨自的)으로 ⇒ 혼자서 동거(同居)하다 ⇒ 같이 살다</p>	<p>면책(免責)되다 ⇒ 책임벗다, 책 임없다 멸실(滅失)/하다 ⇒ 없어짐/ 없어 지다 명(命)하다/할 수 있다 ⇒ 명령하다, 시키다/ 명령할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명목(名目)의 ⇒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까닭 으로도 명시(明示)/하다 ⇒ 밝힘/밝히다 무단(無斷) ⇒ 마음대로, 함부로, 허락없이, 무단(無斷)히 ⇒ 함부로, 허락없이 무효(無效) ⇒ 효력없음 문란(紊亂)한 ⇒ 어지러운 문의(問議)하다 ⇒ 물어 의논하다 반환(返還)하다 ⇒ 되돌리다, 되 돌려주다 발동(發動) ⇒ 행사 발생(發生) ⇒ 생긴, 일어남 발송(發送) ⇒ 보냄 방지(防止)하다 ⇒ 막다 변경(變更)하다 ⇒ 바꾸다 변조(變造)하다 ⇒ 고쳐 만들다 별도(別途)로 ⇒ 따로 별지(別紙) ⇒ 딸린 종이, 딴 종이 별표(別表) ⇒ 따로 붙인표 보관(保管) ⇒ 맡김 보류(保留)하다 ⇒ 미루다</p>
---	--

<p>보수(補修)하다 ⇒ 고치다 보존(保存)/하다 ⇒ 지님. 간직 / 지니다, 간직하다 본(本) 약관 ⇒ 이 약관 부담(負擔)/하다 ⇒ 짐/지다, 더 말다. 부당(不當)한 ⇒ 옳지 않은 부대(附帶) ⇒ 딸린 부대비용(附帶費用) ⇒ 딸린 비용 부대시설(附帶施設) ⇒ 딸린 시설 부득이(不得已) ⇒ 할 수 없이 부여(附與)하다/되다 ⇒ 주다 부적합(不適合)한 ⇒ 알맞지 않은 부족(不足)하다 ⇒ 모자라다 부패(腐敗) ⇒ 썩음 분실(紛失)하다 ⇒ 잃어버리다 분쟁(紛爭) ⇒ 다툼 불가능(不可能) ⇒ 할 수 없음 불가피(不可避)하게 ⇒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不可抗力) ⇒ 어쩔 수 없음 불량(不良)한 ⇒ 좋지 못한 사소(些少)한 ⇒ 하찮은 사유(事由) ⇒ 까닭 사전(事前)에 ⇒ 미리 사체(死體) ⇒ 시체, 주검 산간벽지(山間僻地) ⇒ 산골 외딴 곳 산입(算入)하다 ⇒ 셈해 넣다 산정(算定)/하다 ⇒ 셈하다 상승(上昇) ⇒ 오름</p>	<p>상응(相應)하다 ⇒ 걸맞다 서명(署名) ⇒ 이름적기 성명(姓名) ⇒ 이름 소량(小量) ⇒ 적은 소멸(消滅) ⇒ 없어짐 소지(所持)한 ⇒ 가지고 있는 소형(小型) ⇒ 작은 손상(損傷)하다 ⇒ 떨어뜨리다 송하인(送荷人) ⇒ 짐을 부친 사람 수령(受領) ⇒ 받음 수령자(受領者) ⇒ 받을 사람 수선(修繕) ⇒ 고침 수집(蒐集)하다 ⇒ 모으다 수탁(受託)하다 ⇒ 위탁받다, 부 탁을 받다 수하인(受荷人) ⇒ 짐을 받는 사람 시기(時期) ⇒ 때 식별(識別)하다 ⇒ 알아보기 신속(迅速)하게 ⇒ 빠르게 실비(實費) ⇒ 실제비용 실시(實施)하다 ⇒ 행함/행하다 약정(約定) ⇒ 정함 여부(與否) ⇒ 그런지 아닌지 연기(延期)/하다 ⇒ 미룸/미루다 연월일(年月日) ⇒ 날짜 연착(延着)하다 ⇒ 늦게 도착하다 열람(閱覽)에 공하다 ⇒ 보도록 하다, 보이도록 하다 열람(閱覽)하다 ⇒ 훑어보다 염려(念慮) ⇒ 걱정 예고(豫告) ⇒ 미리 알림</p>
---	---

<p>예시(例示) ⇒ 보기, 보이기 오류정정(誤謬訂正) ⇒ (틀린 것) 고침 외부(外部) ⇒ 바깥쪽 용적(容積) ⇒ 부피 우려(憂慮) ⇒ 근심, 걱정 운송(運送)하다 ⇒ 실어(태워)나르다 운송물(運送物) ⇒ 짐 운임(運賃) ⇒ 짐삿 원상회복(原狀回復)하다 ⇒ 먼저대로 하다 위반(違反)하다 ⇒ 어기다 위법(違法) ⇒ 법을 어김 위조(僞造)하다 ⇒ 속여 만들다 위탁(委託)하다 ⇒ 맡기다 유출(流出)하다 ⇒ 흘러나오다, 나가다 유치(留置) ⇒ 붙들어 둠 유효(有效)하다 ⇒ 효력있다 응(應)하다 ⇒ 따르다 의뢰(依賴) ⇒ 맡김, 부탁 의사(意思) ⇒ 생각, 마음, 뜻 이내(以內)에 ⇒ 안에 이사화물(移徙貨物) ⇒ 이삿짐 이행(履行) ⇒ 실제로 행함 이후(以後) ⇒ 뒤, 다음 인도(引渡)하다 ⇒ 넘겨주다 인수(引受)하다 ⇒ 넘겨받다 일시(日時) ⇒ 때 일자(日字) ⇒ 날짜</p>	<p>일체(一切) ⇒ 모든 것, 모두, 전부 임의(任意)로 ⇒ 마음대로 입장(入場) ⇒ 들어감 입증(立證)하다 ⇒ 증명하다 작성(作成)하다 ⇒ 만들다 잔액(殘額) ⇒ 남은 돈 잔여(殘餘) ⇒ 나머지 재생(再生) ⇒ 다시 쓰게 만들 적재(積載)하다 ⇒ 싣다 적절(適切)한 ⇒ 알맞은 적정(適正)하다 ⇒ 알맞다. 적합(適合)하다 ⇒ 알맞다 절차(節次) ⇒ 차례, 순서 정당(正當)한 ⇒ 옳고 바른, 바르고, 옳고 마땅한 제거(除去)하다 ⇒ 없애다 제공(提供)하다 ⇒ 바치다, 내다, 주다 제반(諸般) ⇒ 여러(가지), 모든 제시(提示)하다 ⇒ 내보이다 제외(除外)하다 ⇒ 빼다 제출(提出)하다 ⇒ 내다 조치(措置)하다 ⇒ 처리하다 존속(存續)하다 ⇒ 남아있다 종료(終了)하다 ⇒ 끝나다, 마치다 주선(周旋)하다 ⇒ 만나다 주의(注意) ⇒ 조심 준수(遵守)하다 ⇒ 지키다 중과실(重過失) ⇒ 큰 잘못 중량(重量) ⇒ 무게 즉시(卽時) ⇒ 곧, 바로</p>
--	---

<p>지급(支給)하다 ⇒ 치르다 지拂(支拂)하다 ⇒ 치르다 지장(支障) ⇒ 장애, 걸림 지장(支障) ⇒ 장애, 걸림 지정(指定)한/하다 ⇒ 정한/(가리켜) 정하다 지체(遲滯) ⇒ 늦어짐 지체(遲滯)없이 ⇒ 곧, 바로 질문(質問) ⇒ 물음 징수(徵收)하다 ⇒ 받다, 거두다 처(處) ⇒ 곳, 장소 처분(處分) ⇒ 처리 초과(超過)하다 ⇒ 넘다 초래(招來)하다 ⇒ 가져오다, 하게하다 최고(催告) ⇒ 재촉, 알림, 독촉 최종(最終) ⇒ 마지막 추가(追加)하다 ⇒ 덧붙이다. 추후(追後) ⇒ 다음, 뒤, 나중, 이다음 충당(充當)하다 ⇒ 메우다, 채우다 타당(妥當) ⇒ 마땅함 태만(怠慢)히 ⇒ 게을리 통상(通常) ⇒ 보통 통용(通用) ⇒ 두루 쓰임 통지(通知)/하다 ⇒ 알림/알리다 파기(破棄)하다 ⇒ 깨버리다, 없애버리다 파손(破損) ⇒ 깨짐 판매(販賣)하다 ⇒ 팔다 포기(拋棄) ⇒ 그만둠</p>	<p>표시(表示)한다 ⇒ 알린다 품행(品行) ⇒ 행실 하객(賀客) ⇒ 축하손님 하자(瑕疵) ⇒ 흠, 잘못 한(限)하여 ⇒ 만 할증료(割增料) ⇒ 웃돈 허위(虛僞) ⇒ 거짓 현저(顯著)한/히 ⇒ 뚜렷이, 두드러지게 현존(現存)하는 ⇒ 그대로, 현재 존재하는, 현재있는 환급(還給)하다 ⇒ 되돌려 주다 환拂(還拂)하다 ⇒ 되돌려 주다 회수(回收)하다 ⇒ 돌려받다, 되걸우다, 찾아가다 훼손(毀損)하다 ⇒ 못쓰게 함, 망가짐, 손상됨/ 손상시키다, 못쓰게 하다 휴대(携帶)하다 ⇒ 가지다, 지나다</p>
---	---

제 2 절 표준약관 문장의 순화기준

1. 비문법적인 문장의 순화

(1) 주어가 생략된 경우

문장성분을 생략하는 경우는 그 성분을 생략하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 앞에 나온 문장성분이라도 그것이 생략되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뜻이 불분명해지는 문장에서는 문장성분을 생략할 수 없다.

표준약관에서도 이러한 문장성분 특히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약관조문에서의 주어는 그 조문이 상정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준약관조문에서는 가급적 주어를 갖출 필요가 있다.

(2) 능동과 피동의 순화

능동과 피동의 표현은 표준약관조문에서 자주 사용된다. 피동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내어진 인물이나 사물이 제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에 의해 되는 행위를 말하고, 능동은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는 행위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표준약관 문장에서는 피동과 능동이 잘못 쓰이거나 뒤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동으로 되어야 할 문장이 능동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표준약관에서 능동과 피동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준용한다’와 ‘준용되다’가 있다.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타동사인 ‘준용하다’를 써서 능동문으로 서술해야 하고,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사인 ‘준용되다’를 써서 피동문으로 서술해야 한다. 이외에도 ‘위반하지 아니한’과 ‘위반되지 아니한’, ‘산입하다’와 ‘산입되다’ 등이 있다.

(3) 조사의 순화

표준약관조항 중 조사가 잘못 사용된 유형으로는 부정확한 조사를 쓴 경우, 조사를 무리하게 생략한 경우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에도 불구하고’를 ‘~에 불구하고’라고 쓰거나, 여격조사 ‘~에게’를 ‘~에’로 쓴 경우, 주격조사 ‘이/가’를 관형격 조사 ‘~의’로 쓴 경우 등이 많다.

표준약관조항에서 주어는 그 조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므로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 이러한 주어임을 분명히 해주는 문장성분이 바로 주격조사이다. 그러나 실제 표준약관조항에서는 주격조사를 불분명하게 사용하거나 생략하는 예가 많다.

첫째, 관형격조사 ‘~의’를 주격조사로 사용한 경우이다. 표준약관조항에서는 주어의 위치에 관형격 조사인 ‘의’를 사용하여 주격조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잦다. 이 경우의 ‘의’는 주격조사로 고쳐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의+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주술호응은 의미파악은 가능하지만 그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둘째, 주격조사를 생략한 경우이다. 표준약관조항에서는 주격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확한 주격조사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격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주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나 어색한 문장이 되기 쉽다.

(4) 시제의 순화

표준약관조항에서는 시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된다. 시제의 오류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한 때’처럼 과거시제로 써야 하는 표현을 현재시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현재시제로 사용해야 하는 때에 과거나 완료시제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 때’는 과거·특수성의 의미가 강한 반면, ‘~하였을 때’는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미래·보편성’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한 때는’는 ‘~하였을 때’로, ‘~아니한 때’는 ‘아니하였을 때’, ‘~된 때’는 ‘~되었을 때’, ‘~받은 때’는 ‘~받았을 때’와 같이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일본어체 문장의 순화

표준약관조항에는 일본식 법령용어는 물론 조항의 서술방식에서 일본 문어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하면’, ‘하지 아니한’ 등과 같은 문어체 표현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명사와 명사를 ‘의’로 연결하는 것과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쉼표를 쓰지 않는 것 등도 있다.

(1) 조사+ 의(の)

한 개 이상의 다른 조사 뒤에 ‘의’가 쓰이는 형은 일본어투이다. 이러한 예로는 ‘~에 있어서의’, ‘~로서의’, ‘~로부터의’, ‘~에의’ 등이 있다.

이 경우 ‘~에 있어서의’는 ‘~의(할) 경우’ 또는 ‘~에서’로, ‘~로서의’는 ‘~로서’, ‘~로부터의’는 ‘~로부터’, ‘~에의’는 ‘~에’로 고쳐 쓸 수 있다.

(2) 이중부정문

일본의 법조문에서는 ‘~해야 한다’란 긍정표현보다는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이중부정의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표준약관조항에서 사용되는 ‘~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라는 형태의 표현은 일본어식 표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해야 ~할 수 있다’와 같이 긍정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명사구 문장의 순화

표준약관조항에서 체언형의 문체로 명사구가 많이 쓰이고 있어 약관 문장을 더욱 딱딱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명사구 문장을 동사구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부드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 표준약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명사구의 표현은 ‘~음을’, ‘~르 것을’, ‘~함에는’ 등이 있다.

4. 문어체 문장의 순화

표준약관조항에는 현재에는 잘 사용되지 않은 문어체 문장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민법 등의 입법 당시 언어습관과 일본 민법전의 문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어체의 표준약관조항은 일반 국민들이 약관을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문어체로 된 법조문은 가급적 평이하고 일상적인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으로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현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있다. 이 표현은 본문 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부정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아니하다’는 ‘않다’나 ‘않는다’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요하다’는 ‘필요로 하다’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5. 명사 위주 압축적 표현의 순화

명사위주의 표현은 간결하고 압축적인 느낌을 주지만 그 대신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고 간혹 지나치게 압축된 문장을 쓰려다가 문법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해 동사 또는 서술어 위주의 표현을 상대적으로 압축적이거나 간결한 느낌은 없어도 자연스럽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구사하기 쉽다.

6. 그 밖의 의미적 오류의 순화

표준약관은 ‘등’, ‘또는’, ‘및’ 등이 남용되고 있어 이를 순화한다.

첫째, 의존명사 ‘등’은 둘 이상의 항목을 제시한 후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두 항목의 공통점이 근거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준약관에서는 ‘등’을

남용하고 있다. 아무런 약칭 약속도 없이 한 항목만 제시하고 ‘등’을 사용하고 있다. ‘등’에 관해서는 한글맞춤법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쓸 때는 붙여쓰고, 앞의 단어와 유사한 다른 것을 나타내는 불완전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표준약관조항에서는 ‘등’이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불완전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등’을 띄어 쓴다. 다만, 나열된 단어를 약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붙여쓴다.

둘째, ‘또는’의 앞뒤에 놓이는 문장 성분은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대등한 자격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약관조항에서 사용되는 ‘또는’은 의미적으로 대등한 자격이 아니다. 따라서 ‘~거나’나 ‘이나’로 대치하여 양자의 문법적 자격을 일치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및’은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인데 조사 ‘와/과’로 대치하여 쓸 수 있는 말이다. ‘및’을 ‘와/과’로 바꾸면 끊기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7. 법률명칭 등 붙여쓰기의 순화

첫째, 법령의 제명은 띄어 쓴다.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는 법령의 제명을 붙여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는 경우에는 법조문의 내용과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견해이지만, 띄어쓰기를 한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고친다.

둘째, 법령조항을 인용하는 경우 법령명과 조항사이에는 띄우고, 조·항·호·목의 명칭은 서로 붙여쓰며, “본문”·“단서”·“전단”·“후단”, “각호”·“각목”의 표시는 앞에 있는 조·항·호·목의 명칭으로부터 띄어쓴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제 1 절 학원표준약관

1. 의 의

전국적으로 많은 학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학원수강료 환급거부, 학원강사의 일방적 교체 등 개별 학원의 약관이 사업자 위주로 작성되어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12월 21일 학원표준약관을 승인·보급하였다.

학원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학원에 대한 교습과정, 강사의 인적 사항 및 수강료 등의 게시의무와 수강료, 수강의 연기, 수강신청의 철회, 계약의 해제 등에 대한 설명의무부과,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의 사유로 수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원은 납부한 수강료 등에서 수강포기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의 교습월수를 공제한 금액의 환급 명시 등이다.

학원표준약관의 용어에서는 게시, 제공, 허위, 징수, 납부, 제출, 제외, 사유, 지체없이, 통지, 위반, 임의로, 개시, 초과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에서는 경어체, ‘또는’, ‘및’ 등의 남용, 법률명칭의 붙여쓰기, 목적어와 주어의 불명확성, 명사+명사 등을 순화한다.

2. 순화안

[현행조문]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학원(이하 ‘학원’이라 합니다)과 학원이 제공하는 교습과정을 수강하는 자(이하 ‘수강자’라 합니다)간의 교습 및 수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화안]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학원(이하 ‘학원’이라 함)과 학원이 주는 교습과정을 수강하는 자(이하 ‘수강자’라 함)사이의 교습과 수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현행조문]

제 2 조 (관계법령)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과 수강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순화안]

제 2 조 (관계법령)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약관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과 수강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과 공정하고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현행조문]

제 3 조 (게시의무) ①학원은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

1. 강사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과목)의 현황과 개요
3. 교습과정(과목)별 수강료 및 일체의 부대비용(교재대금, 실습재료비 등)
4. 교습과정(과목)별 강의시간
5. 이 약관
6. 기타 수강자에게 필요한 사항

②학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부대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합니다)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순화안]

제 3 조 (게시의무) ①학원은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써붙인다.

1. 강사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과목)의 현황과 대강
 3. 교습과정(과목)별 수강료와 모든 딸린 비용(교재값, 실습재료비 등)
 4. 교습과정(과목)별 강의시간
 5. 이 약관
 6. 그 밖의 수강자에게 필요한 사항
- ②학원은 제1항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강료과 부대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함)을 거짓으로 써붙이거나 이를 넘어 받지 않는다.

[현행조문]

제 4 조 (수강신청 및 설명·교부) ①수강자는 학원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등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이 약관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설명하고, 수강료 이외에 교재대금·실습재료비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고지합니다.

③학원은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등을 받은 때에는 수강자에게 영수증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강증을 교부하며, 수강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 약관도 교부합니다.

1. 교습과정(과목)
2. 강의시간
3. 기타 계약의 중요 사항

[순화안]

제 4 조 (수강신청 및 설명·교부) ①수강자는 학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강을 신청하며, 수강신청서를 내고 수강료 등을 내야 한다.

②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을 신청하기 전에 이 약관 제5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설명하고, 수강료 이외에 교재값·실습재료비 등의 딸린 비용을 떠맡아야 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알린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③학원은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등을 받은 때에는 수강자에게 영수증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써넣은 수강증을 내주며, 수강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 약관도 내준다.

1. 교습과정(과목)
2. 강의시간
3. 그 밖에 계약의 중요 사항

[현행조문]

제 5 조 (수강료등) ①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료등을 청구합니다. 다만, 분할지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할 때 1회 분할 수강료등을 청구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 수강료등은 약정한 일자에 청구합니다.

②수강자는 수강료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교재대금은 교재의 구입을 원하는 수강자에게만 청구합니다.

[순화안]

제 5 조 (수강료등) ①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을 신청할 때 수강료등을 청구한다. 다만, 분할로 치를 것을 정한 경우에는 수강을 신청할 때 1회 분할 수강료등을 청구하고, 제2회 다음의 분할 수강료등은 정한 날짜에 청구한다.

②수강자는 수강료등을 신용카드로 치를 수 있다.

③교재값은 교재를 구입하는 수강자에게만 청구한다.

[현행조문]

제 6 조 (수강증) ①수강자는 학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②수강자가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은 허위신고·부당사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합니다.

③수강자는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원은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 6 조 (수강증) ①수강자는 학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내보
여야 한다.

②수강자는 수강증을 잃어버린 경우 바로 학원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학원은 거짓신고·옳지 않은 사용 등의 특별한 까닭이 없는 한 다시
내준다.

③수강자는 수강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옳지 않게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긴 경우 학원은 퇴학시킬 수 있다.

[현행조문]

제 7 조 (강의시간 및 강사) ①학원은 교습과정(과목), 강의시간, 강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합니다.

②학원은 예정된 강의시간 또는 강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수강자에게 고지합니다.

③수강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강의시간에 또는 변경된
강사에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강의개시전
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 7 조 (강의시간과 강사) ①학원은 교습과정(과목), 강의시간, 강사 등
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성실히 지킨다.

②학원은 예정된 강의시간이나 강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바꾼 경우 미리 수강자에게 알린다.

③수강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바뀐 강의시간이나 강사에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바뀐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행조문]

제 8 조 (휴강) ①학원의 휴강일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개원기념일(00월 00일), 00기념일(00월 00일)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②학원은 제1항이 규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휴강을 하지 않습
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장을 실시하며, 이
경우 제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순화안]

제 8 조 (휴강) ①학원의 휴강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과 공휴일

2. 정기휴일: 개원기념일(00월 00일), 00기념일(00월 00일)

②학원은 제1항이 규정하는 날을 빼고는 마음대로 휴강을 하지 않는다.
다만, 어쩔 수 없이 휴강을 하게 될 경우 보장하며, 이 경우 제7조
제2항 단서와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현행조문]

제 9 조 (수강의 연기) ①수강자는 수강신청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수강자가 수강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
서와 수강증을 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학원은 제2항의 연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번 교습과정
(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의
연기를 허락합니다.

④학원이 수강의 연기를 허락한 경우에는 수강증에 강의시간등의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수강자에게 재교부합니다.

[순화안]

제 9 조 (수강의 연기) ①수강자는 수강을 신청한 다음 할 수 없는 까닭
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이 시작되는 날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수강자는 수강의 연기를 신청하는 때 그 까닭을 써넣은 신청서와 수
강증을 학원에 내야 한다.

③학원은 제2항의 연기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번 교습과정(과목)을
열기가 어려운 까닭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수강의 연기를 허락한다.

④학원이 수강의 연기를 허락한 경우 수강증에 강의시간 등의 바뀐 사항을 써넣어 수강자에게 다시 내준다.

[현행조문]

제10조 (수강신청의 철회) ①수강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수강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수강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교습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2. 수강료등의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며(다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해야 함),
3. 수강료등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既納付] 수강료’라 합니다)의 전액
2. 수강자가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 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 또는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생략)
2. 수강자가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3. 수강자가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실습재료비의 전액 (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재료비 (실습을 일부한 경우). 다만, 수강자가 실습을 하지 아니한

재료로서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순화안]

제10조 (수강신청의 철회) ①수강자는 교습이 시작되는 날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수강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증을 받은 날 (수강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습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안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1. 교습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2. 수강료등의 총액이 10만원을 넘으며 (다만, 신용카드로 치른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어야 함),
3. 수강료등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치른 경우

③수강자는 교습이 시작되는 날 이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 수강증을 학원에 되돌리고, 학원은 바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되돌려 준다.

1. 수강자가 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
2. 수강자가 교재값이나 실습재료비를 낸 경우에는 교재값이나 실습재료비의 전액. 다만, 수강자가 되돌리지 않거나 못쓰게 한 교재의 값이나 재료의 비용은 되돌려 주지 않는다.

④수강자는 교습이 시작되는 날 뒤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되돌리고, 학원은 바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되돌려준다.

1. (생략)
2. 수강자가 교재값을 낸 경우에는 교재값. 다만, 수강자가 되돌리지 않거나 못쓰게 한 교재의 값은 되돌려 주지 않는다.
3. 수강자가 실습재료비를 낸 경우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이나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재료비(실습을 일부한 경우). 다만, 수강자가 실습을 하지 아니한 재료로서 되돌리지 않거나 못쓰게 한 재료의 비용은 되돌려 주지 않는다.

[현행조문]

제11조 (계약의 중도해지) ①수강자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교습정지 등), 학원의 이전, 폐강 등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학원의 강의시간 또는 강사의 변경으로 인해 제7조 제3항 또는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생략)

2.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과 실습재료비

②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생략)

2. 제1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습재료비

3.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과 실습재료비

③수강자가 제1항 제4호(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안 후 지체없이 해제한 경우 (생략)

다만, “정당한 교재대금”은 수강자가 당해 교재를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며,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는 수강자가 당해 실습재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2. 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추가로 다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생략)

[순화안]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수강자는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교습정지 등), 학원의 이전, 폐강 등 학원의 책임있는

까닭으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나, 학원의 강의시간이나 강사가 바뀜으로 제7조 제3항이나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강증을 학원에 되돌리고, 학원은 바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되돌려 준다.

1. (생략)

2.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재값과 실습재료비

②수강자는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그의 책임있는 까닭으로 수강을 그만들 생각을 알린 경우 수강증을 학원에 되돌리고, 학원은 바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되돌려 준다.

1. (생략)

2. 제1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습재료비

3.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재값과 실습재료비

③수강자는 제1항 제4호(수강료등을 거짓으로 써넣거나 넘치게 받은 경우)의 까닭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강증을 학원에 되돌리고, 학원은 바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되돌려 준다.

1. 수강자가 해당 까닭을 안 뒤 바로 해제한 경우 (생략)

다만, “정당한 교재값”은 수강자가 해당 교재를 되돌리지 않거나 못쓰게 한 경우에만 빼며,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옳고 마땅한 실습재료비”는 수강자가 해당 실습재료를 되돌리지 않거나 못 쓰게 한 경우에만 뺀다.

2. 수강자가 해당 까닭을 알고서도 계속 수강하다가 해제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셈한 금액에 덧붙여 다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 (생략)

[현행조문]

제13조 (퇴학) ①학원은 다음 각호의 수강자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강사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학원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수강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고 수강을 태만히 하는 사람
- 4.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

②학원은 퇴학을 명할 경우 그 수강자로부터 수강증을 반환받고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 1. (생략)
- 2. 제1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습재료비

[순화안]

제13조 (퇴학) ①학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강자를 퇴학시킬 수 있다.

- 1. 강사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학원 안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 2. 행실이 좋지 못하여 다른 수강자의 교육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람
- 3. 옳고 마땅한 까닭 없이 결석이 잦고 수강을 게을리 하는 사람
- 4. 수강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

②학원은 퇴학을 시킬 경우 해당 수강자로부터 수강증을 돌려받고 바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한다.

- 1. (생략)
- 2. 제1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습재료비

[현행조문]

제14조 (손해배상) ①수강자가 제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도 제1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학원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수강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원의 시설이나 교습기자재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14조 (손해배상) ①수강자가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을 받은 경우 제12조 제1항 각호의 까닭으로 손해가 있을 때에는 학원은 손해를 배상한다.

②수강자는 그의 고의나 과실로 학원의 시설이나 교습기자재가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이로 말미암은 학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현행조문]

제15조 (천재지변등) ①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강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장을 실시하며, 수강자는 보장 실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학원은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보장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수강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하며, 학원이 교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때 지체없이 다음의 각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1. (생략)

2.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과 실습재료비

[순화안]

제15조 (천재지변등) ①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까닭이 생긴 경우 학원은 잠시 휴강하거나 교습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 이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학원은 잠시 휴강한 경우 해당 어쩔 수 없는 까닭이 끝난 뒤 보장을 행하며, 수강자는 보장을 행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학원은 잠시 휴강한 경우 해당 어쩔 수 없는 까닭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거나 보장을 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습을 중단할 수 있다.

④학원은 잠시 휴강한 경우 수강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 바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되돌려 주며, 학원이 교습을 중단한 것을 결정한 때에는 바로 다음의 각호의 금액을 되돌려 준다.

1. (생략)

2.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재값과 실습재료비

[현행조문]

제16조 (관할법원) 학원과 수강자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순화안]

제16조 (관할법원) 학원과 수강자사이의 다툼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체력단련장(헬스장)이용 표준약관

1. 의 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체력단련장 이용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약관을 구비하지 않거나 사업자 위주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 및 불만을 해소하고자 ‘체력단련장(헬스장)표준약관’을 승인·보급하였다.

체력단련장(헬스장)이용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①체력단련장 이용을 할부계약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방문사원 권유로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용철회가 가능하도록 함. ②이용자 사정에 의한 이용시기의 연기가 가능토록 규정, ③계약해제, 해지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이용료 환불 및 위약금을 지급토록 규정하는 것 등이다.

체력단련장(헬스장)이용표준약관의 용어에서는 교부, 게시, 연기, 공제, 용이하계, 환불, 체결, 불가항력 등 어려운 한자어를 일상어로 순화하고, 문장에서는 경어체, 중복표현, ‘또는’, ‘및’ 등의 남용, 법률명칭의 붙여쓰기, 자동사와 타동사의 혼동 등을 순화한다.

2. 순화안

[현행조문]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00체력단련장과 체력단련장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순화안]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00체력단련장(이하 '사업자'라 함)과 체력단련장이 주는 시설과 용역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함)사이 에 맺은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현행조문]

제 2 조 (적용대상) 이 약관은 00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합니다.

[순화안]

제 2 조 (적용대상) 이 약관은 00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행조문]

제 3 조 (이용계약 및 약관 교부) ①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체력단련장 이용신청을 승낙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증과 약식 약관(이용증 이면에 첨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약식약관의 교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 3 조 (이용계약과 약관 교부) ①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이하 '사업자'라 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을 청약하고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②사업자는 체력단련장 이용을 승낙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증과 약식 약관(이용증 뒷쪽에 덧붙임)을 내주어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약식약관의 교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현행조문]

제 4 조 (게시·설명의무)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
2. 지도강사의 인적사항
3. 강습의 변경
4. 이용료
5. 약관내용
6. 소지품 보관시 유의 사항 등

7. 이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②사업자는 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 4 조 (게시·설명의무)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써붙여야 한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과 정원
2. 지도강사의 인적사항
3. 강습의 변경
4. 이용료
5. 약관내용
6. 소지품 보관시 유의 사항 등
7. 이용자 안전수칙 등 그 밖의 필요사항

②사업자는 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시설과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이용방법과 조심사항을 설명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현행조문]

제 5 조 (이용증 제시) ①이용자는 사업자가 이용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순화안]

제 5 조 (이용증 제시) ①이용자는 사업자가 이용증을 내보일 것을 요구 할 경우 이용증을 내보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이용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바로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다시 내어 받아야 한다.

[현행조문]

제 6 조 (이용신청 철회) ①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을 할부계약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방문사원 권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용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에 계약서(또는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한 경우 이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 사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순화안]

제 6 조 (이용청약 철회) ①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을 할부계약으로 청약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7일 이내 문서로, 방문사원 권유로 청약한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용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일에 계약서(또는 약관)을 받지 못한 경우 이용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현행조문]

제 7 조 (이용 연기) ①이용자는 체력단련장 이용 전 또는 이용 중 연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연기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 7 조 (이용 연기) ①이용자는 체력단련장 이용 전이나 이용 중 미필 필요가 있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시기를 미룰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연기신청서를 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③제2항의 청약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까닭이 없는 한 승낙하여야 한다.

[현행조문]

제 8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체력단련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휴업·폐업·정원초과 등으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매 이용 계약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으로 이하 같음) 전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 ③계약의 해제·해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사은품은 반환 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순화안]

제 8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다.

1.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이나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이나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체력단련기구나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이전·휴업·폐업·정원초과 등으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까닭으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②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른다.

<이용시작날 앞서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이용 계약마다 이용료로 낸 총액'으로 이하 같음) 전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되돌려 준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다음 이용자에게 되돌려 준다.

<이용시작날 다음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하는 날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뺀 뒤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되돌려 준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하는 날까지 이용한 날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 다음 이용자에게 되돌려준다.

③계약의 해제·해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준 사은품은 되돌려주지 않는다.

[현행조문]

제 9 조 (손해배상) ①체력단련장의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②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기기의 파손 등 체력단련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 9 조 (손해배상) ①체력단련장의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가 어쩔 수 없이 또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②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기기의 파손 등 체력단련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현행조문]

제11조 (면책조항) ①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이용자가 제1항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을 중단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을 환불합니다.

[순화안]

제11조 (면책조항) ①사업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까닭으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을 중단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빼고 난 후의 금액을 되돌려 준다.

[현행조문]

제12조 (사물함 열쇠 반환) ①이용자는 체력단련장 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열쇠를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종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열쇠 반환일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체력단련장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12조 (사물함 열쇠 반환) ①이용자는 체력단련장 이용이 끝나면 바로 사물함열쇠를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②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이 끝난 날에 사물함 열쇠를 되돌려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열쇠를 되돌려 주는 날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체력단련장 이용이 끝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용자가 사물함 열쇠를 되돌려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사물함을 되건을 수 있다.

[현행조문]

제13조 (기타) ①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②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별첨 생략>

[순화안]

제13조 (기타) ①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거래 관행을 생각하고 신의칙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②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별첨 생략>

제 3 절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1. 의 의

최근 이성간의 만남을 전문적으로 주선해주는 결혼정보회사가 많아지고 이용 회원수도 급증하는 추세이나 그 동안 결혼정보회사의 “회비 환불 제한”, “일방적 자격상실”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다수 회원들의 불만을 야기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2001년 10월 10일 승인·보급하였다.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①가입비에 대한 합리적 환불 기준 마련, ②결혼정보회사측에 회원개인정보 보호의무 부과, ③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회원권리의 내용 명시, ④회원의 의무 및 계약의 중도 해지사유 구체화, ⑤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았던 성혼사례비 규정의 삭제 등이다.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의 용어에서 제공, 개정, 여부, 변동, 체결, 경과, 최고, 경합, 수집, 통지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에서는 경어체, ‘또는’ ‘및’의 남용, 법률명칭의 붙여쓰기, 주어의 생략 등을 순화한다.

2. 순화안

[현행조문]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결혼정보업자, 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결혼관련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화안]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결혼정보업자, 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결혼관련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사항을 규정한다.

[현행조문]

제 2 조 (정의) ①“회원”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소개”라 함은 회사가 회원간에 결혼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교제”라 함은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④“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순화안]

제 2 조 (정의) ①“회원”이란 제3조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사가 그 가입청약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②“소개”란 회사가 회원사이에 결혼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③“교제”란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말한다.

④“결혼관련 개인정보”란 학력, 직업, 병력 등 보통 결혼에서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조문]

제 3 조 (회원가입) ①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1.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있는 자인지 여부의 확인
2.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의 확인

③회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로 인정한 신청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순화안]

제 3 조 (회원가입) ①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 준 뒤에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행하여 알맞은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1.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가 있는지 없는지의 확인
2. 결혼관련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의 확인

③회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 알맞은 신청자에게만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맺는다.

[현행조문]

제 4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회사는 계약 체결시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5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13조의 방법으로 예고합니다.

④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개정약관의 예고기간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순화안]

제 4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회사는 계약을 맺을 때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회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내준다.

②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고칠 수 있다.

③회사가 이 약관을 고칠 경우에는 적용날짜와 고치는 까닭을 밝혀 지금 약관과 함께 그 적용날짜 15일 이전부터 적용날짜 전날까지 제13조의 방법으로 알린다.

④회사가 약관을 고칠 경우에는 고친 약관은 적용날짜 뒤에 맺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고치기 전의 약관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이미 계약을 맺은 회원이 고친 약관 조항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친 약관의 예고기간 안에 회사에 문서로 알려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고친 약관조항이 적용된다.

[현행조문]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 ①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회원에 대한 결혼상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결혼관련 정보의 제공
2. 회원의 소개 및 이를 위한 행사 등의 개최
3. 회원에 대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관리
4. 기타 결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②회사는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가 없는 한 이 약관 변경의 방법에 의해서만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 ①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준다.

1. 회원에 대한 결혼상담과 인터넷 등을 통한 결혼관련 정보를 주는 것
2. 회원의 소개와 이를 위한 행사 등의 개최
3. 회원에 관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관리
4. 그 밖에 결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②회사는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바뀐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가 없는 한 이 약관이 바뀐 방법으로만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바꿀 수 있다.

[현행조문]

제 6 조 (회원자격의 보유기간) ①회원이 회사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횟수의 소개를 다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②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 6 조 (회원자격의 보유기간) ①회원이 회사로부터 제5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을 맺은 날부터 1년이다. 다만, 회사가 제7조 제1항의 횟수로 소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②회사의 책임있는 까닭으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주지 못하고 제1항 본문의 기간이 지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해당 기간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늘리고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조문]

제 7 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제6조에 정한 기간 동안 ○회의 이성 소개를 받습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이성을 소개하는 경우 만남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사전에 제공합니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②회원은 회사의 이성 소개에 대하여 2일전까지 만남을 보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은 이미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본인의 입원, 출장 또는 가족의 사고나 사망 등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할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소개횟수의 산입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은 회사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회원은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아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⑤회원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결혼관련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 7 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제6조의 기간 동안 ○회의 이성 소개를 받는다. 회사는 회원에게 이성을 소개하는 경우 만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미리 준다.

②회원은 회사의 이성 소개에 대하여 2일전까지 만남을 미룰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회원은 이미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그의 입원이나 출장, 가족의 사고나 사망 등 상대방을 만날 수 없는 어쩔수없는 까닭을 밝히면 소개횟수로 셈하지 않는다.

③회원은 회사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회사가 준 인터넷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회원은 회사가 주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무료나 할인 혜택을 받아 참가할 수 있다.

⑤회원은 회원자격이 있는 기간동안 회사가 주는 결혼관련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행조문]

제 8 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회사와 가입계약체결후 회사에 가입비 금 0 0 0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회원은 회사에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회원은 회사와 합의하여 회사가 소개한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⑤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혼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도 같
습니다.

[순화안]

- 제 8 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회사와 가입계약을 맺은 뒤 회사에 가입비
금 0 0 0 원을 내야 한다.
- ②회원은 회사에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주어야 한다.
 - ③회원은 회사에 준 결혼관련 개인정보가 바뀔 경우 15일 안에 회사에
바뀐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④회원은 회사와 합의하여 회사가 소개한 상대방을 만나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후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⑤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월 안에
회사에 교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결혼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

[현행조문]

- 제 9 조 (회원의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주의의무) ①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
습니다.
- ②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③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
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순화안]

- 제 9 조 (회원의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조심의무) ①회원은 회사가 준
인터넷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 ②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 ③회원이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알리는데에 따라 야한다.

[현행조문]

제10조 (계약의 종료) ①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 2. 제6조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경과
 - 3. 회원간의 결혼
 - 4. 회원의 사망, 회사의 파산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만,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회원에게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 병이 있는 경우
 - 3. 이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 4. 회원이 제8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단, 다소 과장된 표현 등 경미한 위반이나 사소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5. 회원이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만남보류의 신청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만남보류를 신청하고 제출하는 제7조 제2항의 소명자료가 허위인 경우
 - 6.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상대방과 만나거나 교제하면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회사에 그에 관하여 2회 이상 항의한 경우
-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2주간의 최고를 하고 회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신용,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원이 법령 기타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④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10조 (계약의 종료) ①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의 계약 해지
2. 제6조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지남
3. 회원사이의 결혼
4. 회원의 사망, 회사의 파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까닭이 확인된 경우 회원에게 재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원이 속여 만들거나 고쳐 만든 서류를 낸 경우. 다만, 회원에게 고의나 큰 잘못이 없는 경우는 뺀다.
 2. 회원에게 결혼에 알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병 등이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과 같이 살 경우
 4. 회원이 제8조 제2항을 어겨 거짓 정보를 준 경우. 다만, 조금 부풀린 표현 등 가볍게 어기거나 하찮은 사항을 빠뜨린 경우는 뺀다.
 5. 회원이 제8조 제4항을 어겨 만남을 미루는 것을 신청하지 않고 함부로 2회 이상 상대방을 만나지 않거나 만남을 미루는 것을 신청하고 낸 제7조 제2항의 밝힌 자료가 거짓인 경우
 6.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상대방을 만나거나 교체하면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회사에 그에 관하여 2회 이상 항의한 경우
-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까닭이 확인된 경우 회원에게 2주 기간을 두고 재촉하고 회원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알맞게 처리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사의 신용, 명예를 떨어뜨리는 경우
 2. 회원이 법령 그 밖에 이 약관을 어긴 경우
 - ④회원은 언제든지 알림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행조문]

제11조 (가입비의 환불) ①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불합니다.

1. 회원가입 계약성립후 회사의 소개개시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소개개시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회수)

③제6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나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입비를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④위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원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가입비를 환불받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회원자격을 타인으로 하여금 보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은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적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11조 (가입비의 환급) ①회사는 자신의 책임있는 까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비 전액을 되돌려 준다. 다만, 회원의 책임이 접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회사는 자신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되돌려 준다.

1. 회원가입 계약성립후 회사의 소개 시작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소개시작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나머지 횟수/총회수)

③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기간을 늘리거나 제10조 제1항 제2와 제3호의 까닭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 가입비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0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외의 까닭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 회원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가입비를 되돌려 받지 않고 그에 걸맞는 회원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알맞은 사람이어야 한다.

[현행조문]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회원에 관한 정보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가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 또는 회원가입신청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소개 등 회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 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계약의 해지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순화안]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회사는 회원에 관한 정보를 모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모은다.

②회사는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모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이나 회원가입신청자의 동의를 받는다.

③회원이 준 개인정보는 해당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소개 등 회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모양으로 준 경우

④회사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모으거나 이용하는 목적, 제3자에게 주는 정보 관련 사항(받는 사람, 준 목적 및 줄 정보의 내용)등을 미리 보이거나 알려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훑어보거나 틀린 것을 고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바로 필요한 처리를 할 의무를 진다. 이용자가 틀린 것을 고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틀린 것을 고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⑥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⑦회사나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는 계약의 해지 그밖에 개인 정보를 모으거나 받은 목적을 이룬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바로 없애 버린다.

[현행조문]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회원에 대한 통지 및 예고는 서면,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13조 (회원에게 알림) 회원에게 알리거나 미리 알리는 것은 문서, 전화, 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현행조문]

제1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순화안]

제1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과 상관례에 따른다.

[현행조문]

제15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지해 드립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로 처리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합니다.

[순화안]

제15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회원이 제기한 불만사항과 의견은 먼저 처리한다. 다만, 빠른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까닭과 처리일정을 바로 알린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로 처리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한다.

[현행조문]

제16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순화안]

제16조 (재판관할과 준거법) ①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사이에 발생한 다툼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②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한국법을 적용한다.

제 4 절 상품권 표준약관

1. 의 의

1999년 2월 정부규제완화 차원에서 상품권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자는 상품권을 자유스럽게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관련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 한국백화점협회와 (사) 대한석유협회가 심사청구한 상품권 표준약관을 1999년 9월에 승인하게 되었다.

상품권 표준약관의 용어에서 권면, 제공, 기재, 재발급, 추가, 훼손, 교환, 반환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에서는 ‘또는’ ‘및’의 남용, 명사구, 등을 순화한다.

2. 순화안

[현행조문]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이하 발행자 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순화안]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이하 ‘발행자’라 함)가 발행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하 ‘고객’ 이라 함)이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사람(이하 '가맹점')이라 함) 사이에 지킬 사항을 규정한다.

[현행조문]

제 2 조 (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다.

1.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 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물품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용역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하나 또는 두가지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만 기재함

[순화안]

제 2 조 (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다.

1. 금액상품권 : 상품권 앞면에 써넣은 금액에 걸맞는 물품 또는 용역 (이하 '물품등' 이라 함)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물품상품권 : 상품권 앞면에 써넣은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용역상품권 : 상품권 앞면에 써넣은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

※하나나 두가지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만 써넣음

[현행조문]

제 3 조 (상품권의 사용) ①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②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순화안]

제 3 조 (상품권의 사용) ①고객이 상품권 앞면에 써넣은 금액이나 수량의 범위 안에서 물품등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나 가맹점은 바로 해당 물품등을 준다.

②고객은 발행자나 가맹점의 매장에서 과는 물품등에 대하여 가격할인 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 앞면에 써넣은 특정 매장(할인매장은 제외함)이나 물품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발행자나 가맹점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람보다 우선하여 고객에게 물품등을 준다.

[현행조문]

제 4 조 (물품·용역상품권의 사용) ①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②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③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순화안]

제 4 조 (물품이나 용역상품권의 사용) ①물품이나 용역상품권에 써넣은 물품등을 줄 수 없거나 주는데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두드러지게 늦어지는 경우 고객의 청구에 따라 발행자나 가맹점은 상품권 앞면에 써넣은 금액(금액을 써넣지 않은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바로 되돌려 준다.

②물품이나 용역상품권에 따라 준 물품등의 품질은 상품권 앞면에 써넣은 내용에 따른다. 다만, 따로 써넣지 않고 품질이 다른 물품등의 경우 상품권 앞면에 써넣은 금액(금액을 써넣지 않은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과 거래관행을 생각하여 알맞은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③발행자나 가맹점은 수량으로 써넣은 물품이나 용역상품권에 따라 물품등을 준 경우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는 등 어떠한 까닭으로 고객에게 덧붙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현행조문]

제 5 조 (상품권의 훼손) ①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②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순화안]

제 5 조 (상품권의 손상) ①고객이 청구하는 경우 발행자나 가맹점은 못쓰게 된 상품권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발급하는 비용은 실제비용의 범위 안에서 고객이 떠맡는다.

②상품권이 못쓰게 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나 가맹점은 상품권을 다시 발급하지 않거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다시 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③물품등의 금액이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못쓰게 되는 등의 까닭으로 그 입력된 내용을 읽을 수 없는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읽어 확인된 금액이나 수량만큼 다른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다.

[현행조문]

제 6 조 (사용기간)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내에 사용할 수 있다.

[순화안]

제 6 조 (사용기간)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5년)안에 사용할 수 있다.

[현행조문]

제 7 조 (상품권의 잔액반환) ①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②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순화안]

제 7 조 (상품권의 남은 돈 되돌려줌) ①상품권은 현금으로 되돌려주지 않는다.

②상품권 앞면에 써넣은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받고 고객이 남은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자나 가맹점은 남은 돈을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

[현행조문]

제 8 조 (지급보증) 상품권의 지급보증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지급보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하는 자와 지급보증의 내용을 기재하며, 지급보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보증되어 있지 않음을 반드시 명시

[순화안]

제 8 조 (지급보증) 상품권의 지급보증은 상품권 앞면에 써넣은 내용에 따른다.

※ 지급이 보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보증하는 사람과 지급보증의 내용을 써넣으며, 지급이 보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반드시 밝힐

[현행조문]

제 9 조 (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순화안]

제 9 조 (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의 권리에 대한 마지막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현행조문]

제10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순화안]

제10조 (그 밖의 사항) 이 약관에서 밝히지 않은 사항이나 약관해석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나 가맹점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5 절 학습지 표준약관

1. 의 의

학습지 구독과 관련된 거래계약이 증가하고 약관이 사업자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소비자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9월 26일 ‘학습지표준약관’을 승인·보급하였다.

학습지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①계약기간을 1개월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장기선납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②학습지를 실제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까지 학습지의 내용을 검토한 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③학습지회사의 허위·과장광고행위에 의한 경우 사업자가 기납부받은 금액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 금액의 1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한 것 등이다.

학습지표준약관이 승인됨으로써 그 동안 학습지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중도해지시의 위약금·부당한 사은품의 반환요구, 학습지배달지연, 상담교사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지 표준약관의 용어에서 연장, 제공, 체결, 반환, 종료, 통지, 환불, 잔여,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에서는 경어체, ‘또는’ ‘및’의 남용, 명사구, 법률명칭의 붙여쓰기, 시제 등을 순화한다.

2. 순화안

[현행조문]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00학습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동 회사가 제공하는 학습지를 제공받는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화안]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00학습지 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회사가 주는 학습지를 받는 사람(이하 ‘회원’이라 함)사이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현행조문]

제 2 조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 월회비(대금)를 매월 납부함에 따라 계약기간은 1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단, 장기(2개월 이상)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회사는 회원이 중도해지시 지급하게 될 위약금 조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 2 조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 월회비 (대금)를 매월 내는 경우 계약기간은 1개월씩 늘어난다.
②장기(2개월 이상)계약을 맺을 경우, 회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때 치를 위약금 조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현행조문]

제 3 조 (입회비) 계약종료시 입회비는 반환되지 않으나, 회원과 재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회사는 그 회원에게 다시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순화안]

제 3 조 (입회비) 계약이 끝났을 때 입회비는 되돌려주지 않으나, 회원과 다시 계약을 맺게 될 경우 회사는 그 회원에게 다시 입회비를 청구할 수 없다.

[현행조문]

제 4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회원이 계약서에 기재된 장소 또는 학습지 종류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③전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원과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제7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순화안]

제 4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회원이 계약서에 써넣은 장소나 학습지 종류를 바꾸려하는 경우 등에는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알린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원과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제7조나 제8조 제1항이 적용된다.

[현행조문]

제 5 조 (무단복제 등의 금지) ①회원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②회원은 제공받은 학습지를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방향으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③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되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 5 조 (무단복제 등의 금지) ①회원에게 준 학습지의 저작권은 회사가 갖는다.

②회원은 받은 학습지를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복제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까닭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해당 회원이 배상하여야 한다.

[현행조문]

제 6 조 (청약의 철회) ①이 계약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회원은 학습지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학습지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구두 · 전화 · 모사전송 ·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이 전항의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회원과 회사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순화안]

제 6 조 (청약의 철회) ①회원은 이 계약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경우 회원은 학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경우는 학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문서로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말 · 전화 · 모사전송 ·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철회할 수 있다.

②회원이 제1항에 따라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회원과 회사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먼저대로 할 의무를 진다.

[현행조문]

제 7 조 (단기계약의 해지)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회원은 제6조의 철회기간 경과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를 환불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 7 조 (단기계약의 해지)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회원은 제6조 제1항의 철회기간이 지난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의 알릴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현행조문]

제 8 조 (장기계약의 해지) ①회원이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지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에서 동 금액의 10%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월2회 이상 학습지 제공을 지체한 경우
2.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육서비스 제공을 불이행한 경우
3.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체된 경우
4.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③전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해지의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를 회원에게 환급하고,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 8 조 (장기계약의 해지) ①회원이 자신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지의 알림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에서 이 금액의 10% 금액을 빼고 남은 돈을 회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사가 월2회 이상 학습지를 늦게 준 경우
2.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육서비스를 주지 않은 경우
3.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바뀐 경우
4. 그 밖에 회사의 책임있는 까닭으로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경우

③제2항의 까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해지의 알림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남아있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를 회원에게 되돌려주고, 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덧붙여 치러야 한다.

[현행조문]

제 9 조 (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을 체결하게된 경우
2. 회사가 상담교사의 신분과 경력을 회원에게 허위로 고지한 경우

②전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받았던 월회비(대금) 전액을 회원에게 환급하고,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전항의 경우 회사가 기 제공한 교재 등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회원은 현존하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 9 조 (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회사의 거짓이나 부풀린 광고로 계약을 맺게 된 경우
2. 회사가 상담교사의 신분과 경력을 회원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②제1항의 까닭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는 회원이 낸 월회비(대금) 전액을 회원에게 되돌려 주고, 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덧붙여 치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회사가 이미 준 교재 등을 되돌려줄 것을 청구할 경우, 회원은 그대로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현행조문]

제10조 (품질보증)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한 학습지 및 교재, 기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무상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순화안]

제10조 (품질보증) 회사는 회원에게 준 학습지와 교재, 그 밖의 상품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공짜로 바꿔주어야 한다.

[현행조문]

제11조 (사은품) ①회사는 사은품의 개봉·사용·파손 등을 이유로 회원의 철회·해지·해제권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②계약종료시 사은품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의 경우 : 회원이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 그대로 반환합니다. 단,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손울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합니다.

2.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경우 : 회원은 사은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회사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순화안]

제11조 (사은품) ①회사는 사은품의 개봉·사용·파손 등을 까닭으로 회원의 철회권, 해지권, 해제권 등을 제한할 수 없다.

②계약이 끝난 때 사은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1. 제6조, 제7조, 제8조 제1항의 경우 회원은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되돌려준다. 다만,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손을 등에 따른 금액을 치르고 되돌려준다.
2. 제8조 제2항과 제9조 제1항의 경우 회원은 사은품을 회사에 되돌리지 않는다.
 - ③회사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써넣지 않은 경우, 회원은 사은품을 되돌리지 않는다.

[현행조문]

- 제12조 (약관의 변경) ①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된 약관은 회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순화안]

- 제12조 (약관의 변경) ①회사가 약관을 바꿀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적용이 예정된 날부터 14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②회원이 바뀐 사항을 밝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의 바뀐 약관은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현행조문]

- 제13조 (기타) ①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회원간에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 ②회사와 회원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순화안]

- 제13조 (그 밖의 사항) ①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거래관행을 생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회원사이에 합의하여 해결한다.

②회사와 회원사이의 다툼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 6 절 세탁업 표준약관

1. 의 의

맞벌이 부분 및 독신자의 증가,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세탁업 시장의 규모가 증대되고, EU가 서비스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드라이클리닝, 다림질, 세탁물배달 등 세탁업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세탁업분야의 거래질서 공정화와 선진화를 확립하고, 세탁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예방 및 소비자피해구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12월 5일 ‘세탁업표준약관’을 승인·보급하였다.

세탁업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①세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증에 계약의 중요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인수증 교부를 의무화함, ②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의 하자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여, ③세탁요금 및 세탁물보관료의 명확화, ④손해배상의 산정방식과 산정기준의 구체화, ⑤고객의 장기 미회수 세탁물에 대한 세탁업자의 임의처분 제한 등이다.

세탁업 표준약관의 용어에서 인수, 교부, 기재, 열람, 해태, 고지, 완료, 허위, 하자 입증, 손상, 분실, 반환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에서는 경어체, ‘또는’ ‘및’의 남용, 명사구, 법률명칭의 붙여쓰기 등을 순화한다.

2. 순화안

[현행조문]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세탁업자와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사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순화안]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세탁업자와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사이 에 맺은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현행조문]

제 2 조 (인수증과 약관의 교부) ①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2.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세탁물 인수일
4. 세탁완성 예정일
5.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6.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7.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기준
8. 기타 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등)

②세탁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들이 열람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 2 조 (인수증과 약관의 교부) ①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넘겨받은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써넣은 인수증을 만들어 고객에게 주어야 한다.

1.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2.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3. 세탁물을 넘겨받은 날
4. 세탁마침날
5. 세탁물의 구입가격과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6. 세탁물의 품명, 수량, 세탁요금

7. 피해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기준

8. 그 밖의 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흔 유무, 특약사항 등)

②세탁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써붙이고,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을 주어야 한다.

[현행조문]

제 3 조 (세탁업자의 의무) ①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②세탁업자는 세탁완성예정일까지 인수한 세탁물의 세탁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일까지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세탁업자는 인수받은 세탁물의 보관·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 3 조 (세탁업자의 의무) ①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넘겨받을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진다.

②세탁업자는 세탁마침날까지 넘겨받은 세탁물의 세탁을 끝내야 한다. 할 수 없는 까닭으로 마침날까지 끝낼 수 없는 때에는 고객에게 그 까닭을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세탁업자는 넘겨받은 세탁물의 보관·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현행조문]

제 4 조 (고객의 의무) ①인수증을 작성할 때 고객은 성명과 연락처, 세탁물의 구입금액 및 구입일 등에 대하여 세탁업자에게 허위로 알려서는 아니됩니다.

②고객은 세탁업자가 세탁물 인수시에 세탁물의 상태에 대하여 질문하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 4 조 (고객의 의무) ①인수증을 만들 때 고객은 이름, 연락처, 세탁물의 구입금액, 구입일 등에 대하여 세탁업자에게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②고객은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넘겨받을 때 세탁물의 상태에 대하여 묻는 경우에 성실히 대답하여야 한다.

[현행조문]

제 5 조 (세탁요금 등) ①세탁요금 및 보관료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소에 게시하고, 해당 고객의 금액은 인수증에 기재합니다.

②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와 기술료, 수선료로 이루어지며,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오점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료란 통상적인 드라이클리닝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오점 등을 특수장비나 약품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데 따른 대가를 말합니다.

③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 이후에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물 회수를 통지한 후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관료는 통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되, 일별 보관료는 세탁요금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세탁업자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세탁물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순화안]

제 5 조 (세탁요금 등) ①세탁요금과 보관료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소에 써붙이고, 해당 고객의 금액은 인수증에 써넣는다.

②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 기술료, 수선료로 이루어지며,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오점을 없애거나 고침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술료란 보통 드라이클리닝으로는 없앨 수 없는 오점 등을 특수장비나 약품 등을 사용하여 없애는 값을 말한다.

③고객이 세탁마침날(고객의 동의로 마침날이 늦어진 경우에는 늦어진 마침날) 뒤에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물을 찾아가라고 알린 뒤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료는 알린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이 지난 날부터 일단위로 셀하되, 일별 보관료는 세탁요금의 3%를 넘어서는 안된다.

④세탁업자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탁물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경우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

[현행조문]

제 6 조 (손해배상) ①세탁업자는 세탁물에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하자발생이 세탁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②세탁물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의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③세탁업자가 세탁완성에정일까지 세탁대상물의 세탁을 완성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체의 책임을 집니다.

④본사와 가맹점으로 구성된 세탁업자들을 포함하여 세탁물을 인수받은 사업자와 실제로 세탁행위를 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연대하여 본조의 책임을 집니다.

[순화안]

제 6 조 (손해배상) ①세탁업자는 세탁물에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흠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먼저 대로 해주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흠이 세탁업자의 책임없는 까닭으로 발생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세탁물의 처리, 넘겨받음, 넘겨줌 등의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조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③세탁업자가 세탁마침날까지 세탁대상물의 세탁을 끝내지 못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늦어진 책임을 진다.

④본사와 가맹점으로 구성된 세탁업자들을 포함하여 세탁물을 넘겨받은 사업자와 실제로 세탁행위를 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양쪽 당사자는 연대하여 이 조의 책임을 진다.

[현행조문]

제 7 조 (손해배상의 기준) ①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 가격×배상비율’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릅니다. 단, 고객과 세탁업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순화안]

제 7 조 (손해배상의 기준) ①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 가격×배상비율’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 다만, 고객과 세탁업자사이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써넣은 내용에 따른다. 다만,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에 써넣은 내용과 다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에 써넣을 사항을 빠뜨렸거나 인수증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증명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④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증명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한다.

[현행조문]

제 8 조 (손해배상액의 감액) ①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는 세탁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 8 조 (손해배상액의 감액) ①세탁물을 못쓰게 될 등에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까닭은 세탁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고객이 못쓰게 된 세탁물을 넘겨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줄일 수 있다.

[현행조문]

제 9 조 (세탁요금의 환급) ①세탁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세탁물이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 등으로 고객에게 세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탁물에 대하여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②전항의 경우에 세탁업자가 세탁요금을 선납받은 경우에는 그 요금을 환급합니다.

[순화안]

제 9 조 (세탁요금의 환급) ①세탁업자의 책임있는 까닭으로 세탁물이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흠이 발생하거나 잃어버림 등으로 고객에게 세탁물을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탁물에 대하여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세탁업자가 세탁요금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되돌려 준다.

[현행조문]

제10조 (면책) ①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에는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제6조의 책임을 면합니다.

1.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귀책 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합니다.

[순화안]

제10조 (면책) ①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갈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주었을 때에는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홀을 고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쓰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도 나중 세탁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흠 또는 세탁의 늦음으로 말미암은 제6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세탁업자가 세탁물 찾아감을 알렸는데 알림이 이른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세탁마침날(고객의 동의로 마침날이 늦게된 경우에는 늦어진 마침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③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흠의 고침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세탁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세탁마침날(고객의 동의로 마침날이 늦게된 경우에는 늦어진 마침날)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책임있는 까닭으로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기간은 셈해 넣는다.

[현행조문]

제11조 (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①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구입가격 20만원 이상 세탁물의 세탁료 및 보관료 등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전항과 같은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③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10조제2항제1호의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11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의 처리) ①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이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안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되돌려 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밝혀 알리고, 고객에게 알림이 이른 날부터 알림에서 정한 기간안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②구입가격 20만원 이상 세탁물의 세탁료, 보관료 등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을 넘는 경우, 세탁업자는 제1항과 같은 알림절차를 거친 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③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안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 보관료,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알림이 이르렀는지 아닌지나 때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세탁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현행조문]

제12조 (약관의 해석 등)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순화안]

제12조 (약관의 해석 등)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거래관행에 따른다.

[현행조문]

제13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순화안]

제13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 7 절 영화관람 표준약관

1. 의 의

최근 들어 영화관객의 층이 두터워지고 관람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별 극장의 영화관람 이용약관이 극장측 위주로 작성되어 소비자(관객)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극장연합회 및 서울시극장연합회의 신청에 따라 영화관람 표준약관을 2001년 2월 2일 승인·보급하였다.

영화관람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①입장권 예약 취소 시간대에 따라 환급 입장권 요금 환급비율 명기, ②영화상영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경우의 환급조항 규정, ③전화·인터넷 등에 의한 예약 효력 부여, ④지정일·지정회의 변경방법 용이 등이다.

영화관람 표준약관의 용어에서 입장, 환급, 기재, 당해, 변경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에서는 경어체, 법률명칭의 붙여쓰기 등을 순화한다.

2. 순화안

[현행조문]

제 1 조 (입장) 관객은 입장권으로 지정일, 지정회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시작 당시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 영화상영업자는 좌석의 한도내에서 지정일, 지정회가 아니더라도 관객이 요청한 순서에 따라 입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 1 조 (입장) 관객은 입장권으로 지정일과 지정회에만 들어 갈 수 있다. 다만, 영화가 시작할 때 좌석이 남는 경우 영화상영업자는 남는 좌석의 범위에서 지정일과 지정회가 아니더라도 관객이 요청한 순서에 따라 입장을 허용할 수 있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현행조문]

제 2 조 (변경) 지정일·지정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관객은 영화상영시작 20분전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변경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단, 미리 수령한 예매권을 소지한 경우 입장권과 교환하여야 유효합니다.
전화번호 (0000 - 00000)

[순화안]

제 2 조 (변경) 지정일이나 지정회를 바꾸고자 하는 관객은 영화상영시작 20분전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바꾸는 차례를 밟아야 한다. 다만, 미리 받은 예매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장권과 바꾸어야 효력이 있다.
전화번호 (0000 - 00000)

[현행조문]

제 3 조 (현금환급) ①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부터 시작시^{까지}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당해 영화상영 시작후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일인 경우는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합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장권에 영화상영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 기재된 시간과 영화상영관 매표소에 기재된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화안]

제 3 조 (현금환급) ①입장권 요금은 입장권에 써넣은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되돌려 준다.

1. 해당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해당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부터 시작할 때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해당 영화상영을 시작한 뒤에는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영화를 상영하는 날 전에는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되돌려 주고, 이 경우 되돌려 줄 것을 요청받은 날부터 48시간 안에 되돌려 준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되돌려준다. 그리고 영화를 상영하는 날인 경우는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바로 되돌려 준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입장권에 영화상영시간이 써넣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문에 써넣은 시간과 영화상영관 매표소에 적힌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조문]

제 4 조 (영화상영지체, 중단시의 입장권 환급) 영화상영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객의 요청에 따라 각각 정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환급합니다. 다만, 관객이 환급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관람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영화상영 시작이 영화상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장권에 기재된 예정시간보다 30분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요금, 1시간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2. 영화상영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30분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순화안]

제 4 조 (영화상영지체, 중단시의 입장권 환급) 영화상영업자는 다음의 까닭이 발생하는 경우 관객의 요청에 따라 각각 정한 금액으로 입장권 요금을 되돌려 준다. 다만, 관객이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관람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영화상영 시작이 영화상영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입장권에 써넣은 예정시간보다 30분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요금, 1시간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2. 영화상영중 10분 이상이나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30분이상이나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현행조문]

제 5 조 (전화·인터넷 등에 의한 예약의 효력)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영화관람을 예약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상영의 시작 전 20분전까지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그 예약을 무효로 합니다.

[순화안]

제 5 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예약의 효력)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영화관람을 예약한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이 시작하기 전 20분 전까지 입장권을 사들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효력없다.

제 8 절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1. 의 의

예식장업의 시장진입과 가격 등이 자유화되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과거의 불공정행위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계약시점(예약일)과 이행시점(결혼식 당일)간의 기차로 인한 사정변경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예식장업자와 소비자들간 분쟁이 빈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12월 14일 ‘예식장표준약관’을 승인·보급하였다.

예식장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①신부드레스, 식당, 사진, 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 이용의 강제 금지, ②사업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소비자가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토록 함, ③기념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훼손된 경우에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이에 추가하여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것 등이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의 용어에서 게시, 하객, 체결, 기명날인, 서명, 교부, 부대, 멸실, 훼손, 부담, 불가항력, 보관,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에서는 경어체, ‘또는’ ‘및’의 남용, 법률명칭의 붙여쓰기 등을 순화한다.

2. 순화안

[현행조문]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예식장을 이용하는 예식당사자등(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의 예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화안]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와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합) 사이의 예식장의 이용에 관한 모든 계약사항을 규정한다.

[현행조문]

제 2 조 (약관의 명시·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에 1통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2. 이용일시 및 이용시간
3. 이용호실
4. 예식비용(예식장, 부대시설, 부대서비스, 부대물품 등 내역별로 이용요금을 기재함)
5. 계약금
6. 기타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③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이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순화안]

제 2 조 (약관의 명시·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①사업자는 계약을 맺은 장소인 사무실안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써붙이고, 계약을 맺기 전에 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한다.

②사업자는 계약을 맺은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써넣은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적은 뒤 1통을 이용자에게 준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2. 이용할 때와 이용시간
3. 이용호실
4. 예식비용(예식장, 부대시설, 부대서비스, 부대물품 등 내용별로 이용요금을 써넣음)
5. 계약금
6. 그 밖의 예식에 필요한 사항

③사업자는 계약을 맺은 때에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 약관을 준다. 다만, 이용자에게 준 계약서에 이 약관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현행조문]

제 3 조 (계약금과 예식비용의 지급) ①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예식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예식비용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 3 조 (계약금과 예식비용의 지급) ①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맺은 때 치러야 한다.

②이용자는 예식이 모두 끝나는 바로 나머지 예식비용을 치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치러야 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금액을 빼고 치를 수 있다.

[현행조문]

제 4 조 (사업자의 의무)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식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및 부대물품을 사전에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②사업자 및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예식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식장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식당, 신랑정장, 신부드레스, 신부화장, 사진·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순화안]

제 4 조 (사업자의 의무)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식을 진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예식장과 딸린 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계약에서 정한 딸린 서비스나 물품을 미리 성실하게 준비한다.
②사업자나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예식비용 이외의 모든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식장을 이용하는데 식당, 신랑정장, 신부드레스, 신부화장, 사진·비디오촬영 등 딸린 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현행조문]

제 5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예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 5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키고, 예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현행조문]

제 6 조 (계약의 해제) ①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예식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다른 호실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나, 사업자가 당해 예식일시에 당해 호실을 이용할 다른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순화안]

제 6 조 (계약의 해제) ①사업자나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예식날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까닭으로 예식날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그 뒤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예식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치른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같은 내용이나 조건으로 다른 호실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

③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까닭으로 예식날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나 사업자가 해당 예식때에 해당 호실을 이용할 다른 이용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되돌려 준다.

[현행조문]

제 7 조 (부대서비스·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또는 부대물품을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부대서비스 또는 부대물품의 이용요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순화안]

제 7 조 (탈린 서비스나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탈린 서비스나 물품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탈린 서비스나 부대물품의 이용요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치른다.

[현행조문]

제 8 조 (기념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①사업자에게 촬영을 의뢰한 기념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이용자가 주요 사진(이하 주례 사진, 신랑·신부 양인 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 사진, 가족 사진, 친구 사진을 말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촬영을 하되 전부를 촬영한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이하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말합니다)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③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④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재촬영요금 및 지급액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액은 예식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순화안]

제 8 조 (기념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①사업자에게 촬영을 맡긴 기념사진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없어지거나 못쓰게 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이용자가 주요 사진(이하 주례 사진, 신랑·신부 양인 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 사진, 가족 사진, 친구 사진을 말함)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촬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는 자신이 비용을 떠맡아 다시 촬영하되 전부를 촬영한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 촬영요금(이하 계약에서 정한 촬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영요금을 말함)을 이용자에게 치르고,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치른다.

③이용자가 주요사진을 다시 촬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치른다.

④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떠맡아 다시 촬영하는 요금과 치른 금액이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떠맡는 치른 금액은 예식비용까지만 이다.

[현행조문]

제 9 조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사업자와 부대시설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용자는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이 약관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대시설 사업자를 소개·추천하면서 그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분명히 하거나,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부대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순화안]

제 9 조 (딸린 시설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사업자와 딸린 시설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용자는 딸린 시설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이 약관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딸린 시설사업자를 소개나 추천하면서 그 딸린 시설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분명히 하거나, 이용자가 혼자서 딸린 시설이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현행조문]

제10조 (사고로 인한 책임) 사업자는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장 및 부대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이용자 및 하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순화안]

제10조 (사고에 대한 책임) 사업자는 예식장이나 부대시설의 흡,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까닭으로 예식장이나 딸린 시설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이용자나 축하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현행조문]

제11조 (휴대물에 대한 책임) ①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휴대한 물건(이하 ‘물건’이라 합니다)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②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④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순화안]

제11조 (휴대물에 대한 책임) ①사업자는 이용자나 축하손님이 지닌 물건(이하 ‘물건’이라 함)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맡긴 경우에는, 그 물건이 없어짐·못쓰게 됨·도난 등이 어쩔 수 없는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벗지 못한다.

②사업자는 이용자나 축하손님이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로 없어짐·못쓰게 됨·도난 등이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사업자는 이용자나 축하손님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써붙인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벗지 못한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④ 화폐, 유가증권 등의 비싼 물건에 대하여는 이용자나 축하손님이 그 종류와 값을 밝혀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맡기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그 물건의 없어짐·못쓰게됨·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행조문]

제12조 (면책)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② 이용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12조 (면책)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까닭으로 계약을 실제로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을 되돌려 준다.

② 이용자는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까닭으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 때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조문]

제13조 (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순화안]

제13조 (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사업자와 이용자사이의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현행조문]

제14조 (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순화안]

제14조 (그 밖의 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과 공정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9 절 이사회물 표준약관

1. 의 의

이삿짐의 훼손·파손·분실 및 이에 대한 피해보상거절, 회피, 사업자의 이사회물인수의 일방적으로 지연, 이사업체의 추가요금 강요, 계약시 약정한 인부나 차량이 오지 않는 것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9월 4일 이사회물표준약관을 승인, 보급하였다.

이사회물 표준약관의 중요내용은 ① 계약서의 표준화 및 계약의 주요 내용 설명의무를 규정, ②계약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운임 및 부대요금청구에 대한 원칙을 적시, ③이사회물의 멸실 등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고 피해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④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이사회물 차량 이외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요건 및 효과를 구체화시킴, ⑤사업자의 배상책임의 소멸사유 및 시효기간을 고객보호의 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규정토록 한 것 등이다.

이사회물 표준약관의 용어에서 이사회물, 반환, 의뢰, 부대, 견적, 작성, 여부, 내역, 기타, 고지, 초과, 처분, 멸실, 훼손, 연착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에서는 경어체, '또는' '및'의 남용, 명사구, 법률명칭의 붙여쓰기 등을 순화한다.

2. 순화안

[현행조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이사화물(이사짐)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 (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이사화물(이사짐)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 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 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화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이사짐을 실어나르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 와 이사짐의 실어나름을 맡기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사이의 이사 짐의 운송,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한다.

[현행조문]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이 약관에서 '포장'이라 함은 발송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하고, '보관'이라 함은 보내는 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정리'라 함은 도착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이 약관에서 '일반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고, '포장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며, '보관이사'라 함은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③이 약관에서 '인수'라 함은 사업자가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발송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말하고, '인도'라 함은 사업

자가 운송한 이사화물을 도착장소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이 약관에서 ‘운임 등’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보관 등을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각 해당 업무에 대한 포장료, 정리료, 보관료 등의 부대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순화안]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이 약관에서 ‘포장’이란 보내는 장소에서 실어나르기 위하여 이삿짐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하고, ‘보관’이란 보내는 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싣고 지니는 것을 말하며, ‘정리’란 도착장소에서 이삿짐을 풀어서 고객의 뜻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서 ‘일반이사’란 고객이 이삿짐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사업자는 이삿짐의 운송만을 맡는 이사를 말하고, ‘포장이사’란 고객이 이삿짐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맡겨 사업자가 이삿짐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는 이사를 말하며, ‘보관이사’란 일반이사나 포장이사의 경우 사업자가 고객의 부탁에 따라 이삿짐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넘겨주는 이사를 말한다.

③이 약관에서 ‘인수’란 사업자가 실어나르기 위하여 이삿짐을 보내는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말하고, ‘인도’란 사업자가 실어나르는 이삿짐을 도착장소에서 고객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④이 약관에서 ‘운임등’이란 이삿짐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고객이 이삿짐의 포장, 정리, 보관 등을 사업자에게 맡긴 경우 각 해당 업무에 대한 포장료, 정리료, 보관료 등의 떨린 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현행조문]

제 3 조 (적용범위) ①이 약관은 이사화물의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 포장이사 또는 보관이사에 적용합니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정 타당한 관례에 따릅니다.

[순화안]

제 3 조 (적용범위) ①이 약관은 이삿짐의 보내는 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 포장이사나 보관이사에 적용한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와 일반적으로 두루 쓰이는 공정하고 마땅한 관례에 따른다.

[현행조문]

제 2 장 견적 및 계약

제 4 조 (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4.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6.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7. 기타 필요한 사항

[순화안]

제 2 장 견적과 계약

제 4 조 (견적) 사업자는 고객이 요청하면 운임 등을 어림셈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써넣은 견적서를 만들어 고객에게 준다.

1.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견적서를 만든 담당자의 이름

2.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이삿짐의 인수·인도때,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용(종류·무게·부피 등), 운임단가
4.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이나 정리를 하는지 않는지, 장비사용 내용)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보관료
6. 운임 등의 합계액과 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현행조문]

제 5 조 (계약) ①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에 같음합니다.

1. 이 약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 내용.

2. 고객이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별지서식-예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대신에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3.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 5 조 (계약) ①사업자는 고객이 이삿짐의 운송을 맡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을 고객에게 밝힌다. 이 경우 고객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 약관의 사본을 준다. 다만, 계약서에 이 약관의 전부를 써넣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준 것을 약관사본을 준 것으로 본다.

1. 이 약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등의 규정 내용.

2. 고객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과 관련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써 넣은 계약서(딸린 종이 서식-보기)를 만들어 고객에게 준다.

1. 제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다만, ‘견적서를 만든 담당자의 이름’에 갈음하여 ‘계약서를 만든 담당자의 이름’을 써넣는다.

2. 계약금, 운임 등의 납은 금액

3. 운송상 특별한 조심사항(깨지기 쉬운 물건을 써넣음 등)과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써넣은 금액을 넘어 계약서에 써넣지 않는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삿짐의 내용, 보관기간이나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셈과 관련된 사항이 바뀌어 견적서에 써넣은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넘는 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 한해 넘는 금액을 써넣을 수 있다.

[현행조문]

제 6 조 (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 6 조 (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줄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조문]

제 7 조 (인수거절) ①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2.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4. 고객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화물이더라도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 7 조 (인수거절) ①이사집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이사집을 넘겨 받지 않을 수 있다.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지닐 수 있는 귀중품
2. 위험하거나 더러운 물건 등 다른 이사집에 손해를 입힐 걱정이 있는 물건
3.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사집과 함께 운송하기에 알맞지 않은 물건
4. 고객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물리친 물건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집이더라도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넘겨받을 수 있다.

[현행조문]

제 8 조 (운임 등의 청구) ①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포장이사의 경우),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의 청구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에 따릅니다.

②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순화안]

제 8 조 (운임 등의 청구) ①사업자는 고객이 이삿짐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일반이사의 경우)나 이삿짐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포장이사의 경우) 운임 등에서 이미 치른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의 청구도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②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써넣은 금액을 넘게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까닭으로 이삿짐의 내용, 보관기간,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쟁과 관련된 사항이 바뀌어 계약서에 써넣은 금액을 넘게 되는 경우 바꾼 때에 넘는 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알린 경우만 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외에 수고비 등 어떠한 까닭으로도 덧붙여 청구하지 않는다.

[현행조문]

제 9 조 (계약해제) ①고객이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2.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②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2.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4배액

3.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6배액

4.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③이사화물의 인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 9 조 (계약해제) ①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까닭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치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미 치른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뺄수 있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1. 고객이 정해진 이삿짐의 인수날 하루전까지 해제를 알린 경우: 계약금
2. 고객이 정해진 이삿짐의 인수날에 해제를 알린 경우: 계약금의 배액
 - ②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까닭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치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미 치른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따로 그 금액도 되 돌려준다.
 1. 사업자가 정해진 이삿짐의 인수날 이틀전까지 해제를 알린 경우: 계약금의 배액
 2. 사업자가 정해진 이삿짐의 인수날 하루전까지 해제를 알린 경우: 계약금의 4배액
 3. 사업자가 정해진 이삿짐의 인수날에 해제를 알린 경우: 계약금의 6 배액
 4. 사업자가 정해진 이삿짐의 인수날도 해제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 ③이삿짐의 인수가 사업자의 책임있는 까닭으로 정해진 인수때부터 2 시간 이상 늦어진 경우에는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준 계약금을 되돌려 받고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조문]

제 3 장 포장 및 인수·인도

- 제10조 (포장) ①일반이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합니다.

[순화안]

제 3 장 포장과 인수·인도

- 제10조 (포장) ①일반이사의 경우 고객이 이삿짐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알맞게 싸고 꾸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사짐의 포장이 운송에 알맞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알맞은 포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포장이사의 경우 사업자가 이사짐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알맞게 싸고 꾸린다.

[현행조문]

제11조 (인수·인도) 사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사화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인수일시와 발송장소에서 인수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시와 도착장소에서 인도합니다.

[순화안]

제11조 (인수와 인도) 사업자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짐을 계약서에 써넣은 인수때, 발송장소에서 넘겨받고, 계약서에 써넣은 인도때, 도착장소에서 넘겨 받는다.

[현행조문]

제12조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수령거절 또는 고객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령불능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약정된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②사업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최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③사업자는 공탁 또는 경매를 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④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최고나 통지는 이사화물의 도착장소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최고나 통지를 할 때 고객이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합니다.
- ⑤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공탁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보관·공탁, 공탁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⑥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보관·경매, 인도청구의 최고, 경매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순화안]

- 제12조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①사업자가 이삿짐의 전부나 일부를 고객이 넘겨받지 않거나 고객이 없는 등으로 넘겨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까닭으로 고객에게 넘겨줄 수 없는 경우 이삿짐을 공탁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할 수 있다. 보관이사의 경우 정해진 보관기간이 지난 뒤 사업자의 책임 없는 까닭으로 넘겨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②사업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재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고객이 이삿짐을 넘겨줄 것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밝혀 재촉하고, 그 재촉이 고객에게 이른 날부터 재촉기간이 지날 때까지 고객의 인도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삿짐의 전부나 일부가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될 걱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삿짐을 고객의 이익을 위해 재촉없이 바로 경매할 수 있다.
 - ③사업자는 공탁이나 경매할 때까지 이삿짐을 맡아야 하며, 공탁이나 경매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다.
 - ④사업자는 이삿짐의 도착장소에서 고객에 재촉하고 알린다. 사업자가 알릴 때 고객이 다른 장소에 사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재촉하고 알린다.

⑤사업자가 이삿짐을 공탁한 경우 이삿짐의 보관·공탁, 공탁의 알릴 등에 들어간 비용과 치르지 않은 운임 등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사업자가 이삿짐을 경매한 경우 경매대금을 이삿짐의 보관·경매, 인도청구의 채측이나 경매의 알릴 등에 들어간 비용과 치르지 않은 운임 등에 메우고, 모자랄 때에는 고객에게 치를 것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되돌려준다. 이 경우 고객에게 되돌려줄 나머지 금액은 고객이 넘겨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한다.

[현행조문]

제13조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①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회물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송 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이 약관 제5조에 의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사업자가 전항에 의해 공동운송을 하거나 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에 대해서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순화안]

제13조 (공동운송이나 다른 운송수단의 이용) ①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넘겨받은 이삿짐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송협정을 맺어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이 약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사항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이 약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

[현행조문]

제 4 장 책 임

제14조 (손해배상) ①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음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2. 연착된 경우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 (연착 시간 수×계약금×1/2)의 지급.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나. 일부 멸실된 경우: 제1호 '가'목의 금액 및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다.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③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순화안]

제14조 (손해배상) ①사업자는 자기나 사용인 그 밖에 이삿짐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이 이삿짐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조심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음의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이삿짐이 없어지고 못쓰게 되거나 늦게 도착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치른다.

1. 늦게 도착하지 않은 경우

가. 전부나 일부 없어진 경우: 정해진 인도날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삿짐의 가액을 기준으로 셈한 손해액을 치름

나. 못쓰게 된 경우: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쳐주고,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름

2. 늦게 도착한 경우

가. 없어지지도 못쓰게 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안에서 정해진 인도때부터 늦게 도착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을 치름. 다만, 늦게 도착한 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셈하지 않음

나. 일부 없어진 경우: 제1호 '가'목의 금액과 제2호 '가'목의 금액을 치름

다. 못쓰게 된 경우: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쳐주고 제2호 '가'목의 금액을 치름,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름

③이삿짐이 없어지고 못쓰게 되거나 늦게 도착하는 것이 사업자나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때 또는 고객이 이삿짐이 없어지고 못쓰게 되거나 늦게 도착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현행조문]

제15조 (고객의 손해배상) ①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고객은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 시간 수×계약금×1/2)을 손해배상액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②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15조 (고객의 손해배상) ①고객의 책임있는 까닭으로 이사짐을 늦게 넘겨받은 경우에는 고객은 정해진 인수때부터 늦은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 시간 수×계약금×1/2)을 손해배상액으로 사업자에게 치러야 한다. 다만, 계약금의 배액안에서 치르며, 늦은 시간수의 셈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셈하지 않는다.

②고객의 책임있는 까닭으로 이사짐을 정해진 인수때부터 2시간 이상 늦게 넘겨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이미 치른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현행조문]

제16조 (면책)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3.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순화안]

제16조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까닭으로 이삿짐이 없어지고 못 쓰게되거나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까닭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1. 이삿짐의 흡이나 자연적 소모
2. 이삿짐의 성질에 따른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3. 법령이나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이나 제3자에 대한 인도
4.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까닭

[현행조문]

제17조 (멸실·훼손과 운임 등) ①이사화물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은 이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그 운임 등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②이사화물이 그 성질이나 하자 등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17조 (멸실이나 훼손과 운임 등) ①이삿짐이 천재지변 등 어쩔수 없는 까닭이나 고객의 책임 없는 까닭으로 전부나 일부가 없어지거나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못쓰게 된 경우 사업자는 없어지거나 못쓰게 된 이삿짐에 대한 운임 등은 청구하지 못한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 등을 받은 때에는 되돌려준다.

②이삿짐이 성질이나 흠 등 고객의 책임있는 까닭으로 전부나 일부가 없어지거나 고칠 수 없을 못쓰게 된 경우 사업자는 없어지거나 못쓰게 된 이삿짐에 대한 운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현행조문]

제18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순화안]

제18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이삿짐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못쓰게 된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삿짐을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일부가 없어지거나 못쓰게 된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없어진다.

②이삿짐이 없어지고 못쓰게 되거나 늦게 도착한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삿짐을 넘겨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다만, 이삿짐이 전부 없어진 경우에는 정해진 인도날부터 셈을 시작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이삿짐이 일부 없어지거나 못쓰게 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삿짐을 넘겨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삿짐을 넘겨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남아있다.

[현행조문]

제19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그 멸실·훼손 또는 연착
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순화안]

제19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이삿짐이 운송 중에 없어지고 못쓰게 되거
나 늦게 도착한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없어지고 못쓰게
되거나 늦게 도착한 날부터 1년 안에 사고증명서를 내어준다.

[현행조문]

제20조 (관할법원) 사업자와 고객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별지 생략>

[순화안]

제20조 (관할법원) 사업자와 고객사이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별지 생략>

제10절 택배 표준약관

1. 의 의

최근 택배사업은 신속·편리한 서비스 자체의 특성, 전자상거래의 발전 등 환경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이나, 개별 사업자의 택배약관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표준약관을 2001년 7월 11일 승인·보급하였다.

택배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①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설명의무 부과, ②파손·멸실 등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③위탁한 화물이 멸실된 경우 사업자에게 실제 피해액을 보상토록 명시, ④택배의 배송시간 명시와 약정 배송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배상을 의무화, ⑤사업자가 화물운송장에 기재한 일방적 면책조항의 삭제 등이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택배 표준약관의 용어에서 운송물, 반환, 부대, 작성, 내역, 기타, 고지, 초과, 처분, 멸실, 훼손, 연착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에서는 경어체, ‘또는’ ‘및’의 남용, 명사구, 법률명칭의 붙여쓰기, 능동과 피동의 혼동 등을 순화한다.

2. 순화안

[현행조문]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화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한다.

[현행조문]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위탁하는 자로서 운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④‘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⑥‘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 주는 것을 말합니다.

⑧‘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그 금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합니다.

[순화안]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택배’란 작고 적은 짐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그 밖의 장소에서 부탁받아 짐을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그 밖의 장소까지 실어날러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②‘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란 택배를 영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고객’이란 사업자에게 택배를 맡기는 사람으로서 운송장에 짐을 부친 사람으로 써넣은 사람을 말한다.

④‘수하인’이란 고객이 운송장에 짐을 받을 사람으로 정하여 써넣은 사람을 말한다.

⑤‘운송장’이란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고객이 내어준 문서를 말한다.

⑥‘수탁’이란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의 짐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⑦‘인도’란 사업자가 짐을 받는 사람에게 운송장에 써넣은 짐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⑧‘손해배상한도액’이란 짐이 없어지고 못쓰게 되거나 늦게 도착한 때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짐값을 써넣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자는 그 금액을 미리 이 약관의 따로 붙인 표에 내보인다.

[현행조문]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택배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②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제5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③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순화안]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①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써붙이며, 택배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맺는 때에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이 약관을 내준다.

②사업자는 계약을 맺은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한다.

1. 고객이 운송장에 짐값을 써넣으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때 그 값이 손해배상액을 셈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운송장에 짐값을 써넣지 않으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때 제5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한도액 안에서만 손해를 배상한다는 사항

③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게 계약을 맺은 때에는 해당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다.

[현행조문]

제 4 조 (적용법규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순화안]

제 4 조 (적용법규등)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른다.

[현행조문]

제 2 장 운송물의 수탁

제 5 조 (운송장) ①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하자)이름
2.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4.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5. 손해배상한도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할 경우 이 한도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6. 문의처 전화번호
7.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1. 송하인(고객)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하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을 것
4.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특정 일시에 수하인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및 인도예정일시를 기재함)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6.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순화안]

제 2 장 운송물의 수탁

제 5 조 (운송장) ①사업자는 계약을 맺은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써넣은 운송장을 만들어 고객에게 내준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집하자) 이름
2. 짐을 부탁받은 해당 사업소(사업자의 본점, 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3. 짐의 무게와 부피 구분
4. 운임 그 밖에 운송에 관한 비용과 치른 방법
5. 손해배상한도액

※고객이 운송장에 짐값을 써넣지 않으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때 이 한도액이 적용되는 것을 밝힐 것

6. 문의처의 전화번호
7. 그 밖에 운송에 필요한 사항

②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어받은 운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써넣고 이름쓰고 도장찍거나 이름적어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내어준다.

1. 짐을 부치는 사람(고객)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전화번호
2. 짐을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전화번호
3. 짐의 종류(품명), 수량, 값

※고객이 운송장에 짐값을 써넣으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때 이 값이 손해배상액을 셈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밝힐 것

4. 짐을 넘겨받을 장소와 넘겨받을 날(특정한 때에 짐을 받는사람이 사용할 짐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과 넘겨받을 때를 써넣음)
5. 운송에 특별한 조심사항(못쓰게 될, 변질, 썩음 등 짐의 특성구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음)
6. 운송장을 만든 날짜

[현행조문]

제 6 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운송물이 포장당 ()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순화안]

제 6 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사업자는 짐을 부탁받을 때 고객에게 짐값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짐을 넘겨받을 때에는 짐을 받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짐을 받는 사람이 짐값을 치르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짐을 붙들어 들 수 있다.

③운송물이 포장당 ()만원을 넘거나 운송에 특별한 조심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웃돈을 청구할 수 있다.

④운임과 웃돈은 미리 이 약관의 따로 붙인 표에 별표에 내보이고 운송장에 써넣는다.

[현행조문]

제 7 조 (포장) ①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고객의 부담으로 필요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 7 조 (포장) ①고객은 짐을 그 성질, 무게, 부피 등에 따라 운송에 알맞도록 싸고 꾸려야 한다.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②사업자는 짚의 포장이 운송에 알맞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고객이 떠맡아 필요한 포장을 할 수 있다.

[현행조문]

제 8 조 (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예정일(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순화안]

제 8 조 (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부탁받은 뒤 그 포장의 바깥쪽에 짚의 종류·수량, 운송에 특별한 조심사항, 넘겨 받을 날짜(시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알린다.

[현행조문]

제 9 조 (운송물의 확인) ①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

[순화안]

제 9 조 (운송물의 확인) ①사업자는 운송장에 써넣은 짚의 종류와 수량을 고객이 동의하면 그 고객이 참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짚을 확인한 경우 짚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운송장에 써넣은 것과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를 떠맡으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떠맡는다.

[현행조문]

제10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가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cm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kg를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순화안]

제10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짐을 부탁 받지 않을 수 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써넣지 않은 경우
2. 고객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알맞게 포장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거절하거나 짐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써넣은 것과 다른 경우
4. 짐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cm를 넘거나, 최장변이 ()cm를 넘는 경우
5. 짐 1포장의 무게가 ()kg를 넘는 경우

제 3 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6. 짚 1포장의 값이 ()만원을 넘는 경우
7. 짚을 넘겨 줄 날(시간)에 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8. 짚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짚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법을 어긴 물건인 경우
10. 짚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짚이 다시 만들 수 없는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짚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시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경우
14. 천재, 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까닭으로 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현행조문]

제 3 장 운송물의 인도

제11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 3 장 운송물의 인도

제11조 (공동운송이나 다른 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탁받은 짚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맺어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현행조문]

제12조 (운송물의 인도일)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1.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2.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가. 일반 지역 : 2일

나. 도서, 산간벽지 : 3일

②사업자는 수하인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순화안]

제12조 (운송물의 인도일)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넘겨 줄 날까지 짐을 넘겨준다.

1. 운송장에 넘겨줄 날을 써넣은 경우에는 그 날
2. 운송장에 넘겨줄 날을 써넣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장에 써넣은 짐을 부탁받은 날부터 넘겨 줄 장소에 따라 다음 날수에 해당하는 날

가. 일반 지역 : 2일

나. 섬, 산골 외딴 곳 : 3일

②사업자는 짐을 받는 사람이 특정한 때에 사용할 짐을 부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써넣은 넘겨줄 날의 특정 시간까지 짐을 넘겨준다.

[현행조문]

제13조 (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순화안]

제13조 (수하인이 없는 경우의 조치) ①사업자는 짐을 넘겨줄 경우에는 짐을 받는 사람에게 넘겨줍을 확인받아야 하며, 짐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에게 짐을 넘겨줄 경우에는 짐을 부친 사람에게 사실을 알린다.

②사업자는 짐을 받는 사람이 없어 짐을 넘길 수 없는 경우에는 짐을 부친 사람에게 짐을 넘기고자 한 때,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그 밖에 짐을 넘기는데 필요한 사항을 써넣은 문서(부재중 방문표)으로 알린 뒤에 사업소에 짐을 맡는다.

[현행조문]

제 4 장 운송물의 처분

제14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①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사업자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합니다. 다만, 수하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수하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에게 최고합니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사업자의 과실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④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수하인이나 고객에 대한 최고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경매·보관, 최고, 통지, 고객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은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순화안]

제 4 장 운송물의 처리

제14조 (넘겨줄 수 없는 짐의 처리) ①사업자는 짐을 받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짐을 받는 사람이 짐을 받지 않거나(수령거절)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짐을 공탁하거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매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운송물의 처리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밝혀 지시를 재촉한다. 다만, 짐을 받는 사람이 짐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짐을 받는 사람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받을 것을 재촉하고 그 기간 안에도 받지 않는 때에 고객에게 재촉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에 대한 재촉이 고객에게 이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이른 날부터 재촉에서 정한 기간 안에 지시가 없으면 짐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재촉이 사업자의 과실이 없이 고객에게 이른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촉을 보낸 날부터 3개월동안 짐을 맡은 뒤에 경매할 수 있다.

④사업자는 짐이 없어지거나 못쓰게 될 것으로 걱정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짐을 받은 사람이나 고객에게 재촉하지 않고 바로 경매할 수 있다.

⑤사업자는 짐을 공탁이나 경매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다.

⑥고객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물의 공탁·경매·보관, 재촉, 알립, 고객의 지시에 따른 짐의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떠맡으며, 사업자는 짐값이 치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짐값을 청구할 수 있다.

⑦사업자는 짐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짐의 경매·보관, 재촉, 알립 등에 드는 비용과 짐값(짐값이 치러지지 않은 경우에만)에 떼우고,

모자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치를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되돌려준다. 이 경우 고객에게 되돌려 줄 나머지 금액을 고객이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한다.

[현행조문]

제15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①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순화안]

제15조 (고객의 처리청구권) ①고객은 사업자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청구한 때에는, 공동운송이나 다른 운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운송에 두드러지게 장애가 발생할 걱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다. 이 경우 고객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짐값과 짐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떠 맡는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의 청구권은 짐을 받는 사람에게 짐을 넘겨준 때에 없어진다.

[현행조문]

제 5 장 운송물의 사고

제16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순화안]

제 5 장 운송물의 사고

제16조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 ①사업자는 짐을 부탁받은 뒤 짐을 넘겨주기 전까지 전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다.

②사업자는 짐을 부탁받은 뒤 짐을 넘겨주기 전까지 일부가 없어지거나 두드러지게 못쓰게 된 것을 알게 된 때나 짐을 받을 날보다 두드러지게 늦게 도착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리에 관한 지시를 재촉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나 사업자가 정한 기간 안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필요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바로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다

[현행조문]

제17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순화안]

제17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운송 중에 짐이 없어지고 못쓰게 되거나 늦게 도착한 경우 고객이 청구하면 그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사고증명서를 내어준다.

[현행조문]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18조 (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순화안]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18조 (책임의 시작) 짐이 없어지고 못쓰게 되거나 늦게 도착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은 짐을 고객으로부터 부탁받은 때부터 시작된다.

[현행조문]

제19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순화안]

제19조 (공동운송이나 다른 운송수단을 하는 경우의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맺어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짐이 없어지고 못쓰게 되거나 늦게 도착한 때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현행조문]

제20조 (손해배상) ①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의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의 지급.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의 지급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함

③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일부 멸실된 때: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에 의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 함

④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순화안]

제20조 (손해배상) ①사업자는 자신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이 집의 부탁, 인도, 보관, 운송에 관하여 조심을 기울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짐이 없어지고 못쓰게 되거나 늦게 도착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②고객이 운송장에 짐삯을 써넣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부나 일부가 없어진 때: 운송장에 써넣은 짐삯을 기준으로 셈한 손해액을 치름

2. 못쓰게 된 때

가. 고칠 수 있는 경우: 고쳐준

나. 고칠 수 없는 경우: 제1호의 규정에 따름

3. 늦게 도착하고 일부가 없어지거나 못쓰게 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짐을 넘겨 받을 날을 넘은 날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써넣은 짐삯(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넘은 날수 ×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치름.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안에서 치름

나. 특정한 때 사용할 짐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치름

4. 늦게 도착하고 일부가 없어지거나 못쓰게 된 때: 제1호와 제2호에 따름

③고객이 운송장에 짐삯을 써넣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한도액안에서 치른다.

1. 전부가 없어진 때: 짐을 받을 날의 받을 장소의 짐삯을 기준으로 셈한 손해액을 치름

2. 일부가 없어진 때: 짐을 받은 날의 받은 장소의 짐삯을 기준으로 셈한 손해액을 치름

3. 못쓰게 된 때

가. 고칠 수 있는 경우: 고쳐준

나. 고칠 수 없는 경우: 제2호에 따름

4. 늦게 도착하고 일부가 없어지나 못쓰게 되지 않은 때: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

5. 늦게 도착하고 일부가 없어지거나 못쓰게 된 때: 제2호와 제3호에 따르되, '받은 날'을 '받을 날'로 함

④ 사업자는 사업자나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짐이 없어지고 못쓰게 되거나 늦게 도착한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현행조문]

제21조 (사고발생시의 운임등의 환급과 청구) ①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최고·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최고·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화안]

제21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짐값 등의 환급과 청구)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까닭이나 고객의 책임없는 까닭으로 짐이 없어지고 두드러지게 못쓰게 되거나 늦게 도착한 경우 짐값과 함께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알림·재촉·짐의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사업자는 이미 받은 짐값이나 비용을 되돌려 준다.

② 사업자는 짐의 성질·흠이나 고객의 과실로 짐이 없어지고 두드러지게 못쓰게 되거나 늦게 도착한 경우 사업자는 모든 짐값과 함께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알림·재촉·짐의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조문]

제22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순화안]

제22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까닭으로 짐이 없어지고 못쓰게 되거나 늦게 도착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행조문]

제23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순화안]

제23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짐이 일부 없어지거나 못쓰게 된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짐을 받은 사람이 짐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그 일부가 없어지거나 못쓰게 된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없어진다.

②짐이 일부 없어지고 못쓰게 되거나 늦게 도착한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짐을 받은 사람이 짐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다만, 짐이 전부 없어진 경우에는 짐을 넘겨 받을 날부터 셈을 시작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짐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못쓰게 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짐을 넘겨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짐을 받은 사람이 짐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남아있다.

제 4 장 결 론

지금까지 표준약관의 용어와 문장의 순화안을 10개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용어부문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였고, 문장부문에서는 경어체, ‘또는’·‘및’의 남용, 주어의 생략, 법률명칭의 붙여쓰기 등을 순화하였다.

2004년 1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계기로 표준약관의 용어와 문장의 순화는 더욱더 표준약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표준약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표준약관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약관이 제정될 것이다.

첫째, 표준약관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주체를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사업자(단체)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업자측이 스스로 청구치 않을 경우 표준약관의 제정이 불가능하였으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등록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동법 제19조의2 제2항), 소비자단체 등이 요청이 있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동법 제19조의2 제3항과 제4항),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활용도를 제고,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사용권장을 받은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개별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달리 사용하는 부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동법 제19조의2 제5항과 제6항).

셋째, 표준약관의 보급확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표시(마크)를 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표시의 허위사용 등에 대한 제재근거 등을 마련하였다(동법 제19조의2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또한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시를 허위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개별 약관의 내용은 그 효력이 없도록 하였고, 소비자 오인성이 크고 표준약관의 신뢰를 크게 해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표준약관정책을 약관의 불공정성 해소라는 차원과 함께 약관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과 같이 표준약관의 승인 기준을 만들어 표준약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표준약관의 승인기준의 내용에는 약관용어의 순화는 물론 표준약관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장구조의 표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목적규정, 정의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일 등의 규정의 기본적인 문장을 예시한다.

참 고 문 헌

- 강현철,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 현안분석 2003-9, 한국법제연구원, 2003.
- 김도경·안재홍, “부가통신산업 표준약관제도 확대 가능성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15권 12호 통권 327호, 2003.7.1.
- 김동욱, “일본어학의 관점에서 본 우리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 김문오,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2001.
- 김문오,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법무부 검토 의뢰 법령을 중심으로』, 국립국어연구원, 2002.
- 김문오,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 국립국어연구원, 2002.
- 김문오·홍사만,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2003.
- 김문헌 외,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 김성천, “약관상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령용어정비사업 제1차전문가회의자료, 한국법제연구원, 2002.
- 류창호, 『민법 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현안분석 2003-8, 한국법제연구원, 2003.
- 박갑수, “개정 민사소송법의 순화와 향후과제”, 『개정 민사소송법의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와 향후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3.
- 박영도, 『법률용어사례집 - 유사법령용어』, 한국법제연구원, 2001.

참고문헌

-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96.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 2002.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 제2집(상/하), 2003
- 이수열, 『우리말 우리글 바로 알고 바로 쓰기』, 지문사, 1994.
- 장경환, “인터넷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의 검토”, 『상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2001.
- 한국법제연구원, 『개정민사소송법의 법령용어 및 법률문장의 순화와 향후과제』, 법령용어정비사업 제2003년 제1차 전문가회의, 2003.4.30.
-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요거래분야 약관이용 실태분석 및 표준약관(안)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용역과제보고서, 2000.11.
- 호문혁, “개정 민사소송법의 순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개정 민사소송법의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와 향후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3.